

차오

미래의 희망 로스쿨

LawSCHOOL

2016. MAY + JUN



05/06



-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N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 prologue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어려움 한 가운데,
그곳에
기회가 있다.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6

05 + 06



발행일 2016년 5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오수근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표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로스쿨 탐방**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준근 원장
- 08 **파워인터뷰**
이은의 변호사
- 12 **행복로스쿨**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용석 학생
- 14 **생생정보통**
- 18 **통계로 보는 로스쿨 합격자**
- 20 **협의회 소식**
- 24 **스페셜 인터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원장
- 28 **로스쿨 오피니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
고려대학교 박도순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경훈 교수
- 34 **특별기고**
나영주 변호사, 조혜연 변호사, 기미진 변호사
- 40 **로스쿨 핫이슈**
- 42 **로스쿨 특파원**
인하대학교 최혁용, 제주대학교 조주상
- 46 **언론 속 로스쿨**
- 52 **SPECIAL REPORT**
마을 변호사 제도
- 56 **리걸클리닉 스케치**
- 60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 책 읽어주는 변호사**
- 68 **툭아보기 / 문화가 산책**
- 72 **OUT CAMPUS / LAW 낱말퀴즈**

오늘날의 세계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내 법률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법조인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무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다.

editor. 박소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준근 원장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우수한 법률가 양성, 경희대학교 법전문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Q.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문)을 자평한다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문')은 작지만 강한 로스쿨,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개인 이래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결과물을 꾸준히 내고 있다. 학부에서 법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전공과 이력을 가진 학생들이 본교 3년의 학업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이론과 실무능력,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된다는 것이 경희대 법전문원의 설립 취지이자 교육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수한 커리큘럼은 경희대 법전문원의 자랑이다. 기초-심화, 첨단전개-종합단계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커리큘럼 운영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이라는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충실히 실현하고 있다. 쾌적한 교육 시설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재학생 전원에게 1인 1 좌석 개인 열람실 제공, 형사·민사 모의법정, 각종 세미나실 및 스터디실, 첨단 시설과 양질의 자료를 구비한 법학도서관 운영을 통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

Q. 경희대 법전문이 지향하는 법조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라고 생각한다.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하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법조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약자의 편에 서서 배려하고, 열심히 뛰다보면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가 축적될 텐데 억지로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정량 평가가 중요시 되는 입시과정에서 서류평가와 짧은 면접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사람인지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일단 들어오게 되면 3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식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갖추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교육이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약력

독일Konstanz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Jur.)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국민권익위원회 2011-12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12 위원장(겸직)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4 회장 現 고문
한국과학기술법학회 2015 現 부회장

Q. 비법학 전공자들의 법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특별하게 고안한 프로그램이 있나?

매 학년도 1월 경 프리로스쿨(Pre Law Schoo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리로스쿨 프로그램은 법전문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 준비 프로그램이며, 법학도/비법학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입학 전 법학 기초과목에 대한 사전학습을 할 수 있으며, 법학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학업생활 정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1학년 1학기에는 스타트 라인이 앞서 있는 법학 전공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갖지만, 2학년이 되면서 그 간격이 상당히 좁혀진다. 3학년에 올라가면 법학 전공자와 비법학 전공자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반대의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Q. 법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법학은 성실한 사람이 잘 할 수 있다. 법학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이 들어왔지만, 수석졸업까지 하고 검사가 된 학생도 여럿 보았다. 비법은 성실함이다. 교수의 강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3년 뒤에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반면 법대를 나온 학생 중에는 자신은 이미 법학도사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성적이 하위로 처졌다. 이는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했거나, 사시 준비를 했을지라도 본인의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성실성이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처음에는 느릴지라도 묵묵히 전진하는 거북이가 교만한 토끼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Q.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비법이 있나?

우리 학교는 1회와 2회 변호사시험에서 초시 기준 100% 합격자를 배출함으로써 2년 연속 전국 합격률 1위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제3-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88.2%, 85.4%로 전국 최상위권의 합격률을 달성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까닭은 '우수한 교수진의 밀착지도 시스템'이 작용

<경희대학교 법전문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초시 기준)>

구분	전체 합격률	경희대 법전문 합격률
제1회(2012)	87.2%	100.00%
제2회(2013)	80.8%	100.00%
제3회(2014)	76.8%	88.2%
제4회(2015)	74.7%	85.4%
누 계	79.8%	92.1%



동했기 때문이다. 교수 1인당 학생비율 5.9명이라는 지표가 말해주듯 세심한 지도가 가능한 소규모 강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화된 교육과정에 토대를 둔 교수진의 헌신적 지도가 높은 합격률과 취업률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본교만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엄정한 학사관리' 또한 높은 합격률의 비법이다. 시험시 ID를 무작위로 부여하고 비실명으로 답안지를 작성, 채점하도록 하여 학생들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종합시험 사정 시 실명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오로지 실력만을 평가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Q. 특성화 과목을 '글로벌 기업 법무'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국제교류센터(Center of International Affairs)의 역할도 궁금하다.

본 대학교가 건학 이래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것은 경희 구성원의 세계화 및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의 함양이다. 국제화 시대인 21세기에 대학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의 국제화가 필수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학은 글로벌 국제법무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법무를 본교의 특성화 분야로 선택했다.

또한 특성화 목표 구현과 학생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로스쿨 내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여 국제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 총 11개국 21개 해외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여름에는 미국의 Akron대, 일본의 나고야대학이 함께 공동 국제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원하면 미국 Akron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미국의 JD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정되어 있다.

Q. 리걸클리닉 운영을 비롯해 ‘법과 사람사이’라는 학회의 운영도 활발하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경희대 법전원에서는 리걸클리닉 사업을 통해 학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동대문구민),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수행을 실시해 왔다. 특히 ‘법과 사람사이’는 학생들이 수업에서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무료 법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학회로서, 경희 법전원 자치모임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과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학기 중에는 지역 및 학내 구성원이 법률상담을 요청하면 수시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방학 중에는 백령도, 울릉도 등 법률 서비스 소외지역에 방문하여 실무 교원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Q. ‘돈스쿨’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돈스쿨’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신림동 인근의 사교육 시장에서 법전원 교육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단순히 강의만 듣고 몇 번의 첨삭을 받았을 뿐인데도 많은 돈이 든다. 그런데 법전원은 사교육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을뿐더러, 교수진, 시설 등 학생들을 위한 모든 편의가 갖춰져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각종 실무과목 수업의 매시간 첨삭지도도 받는다. 이렇게 전문적인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부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되고 있어 안타깝다.

Q.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

경희대 법전원은 교육시설운영, 장학금 지원 등 등록금 재원 이상을 운영에 투입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 매년 등록금 수입의 29% 이상을 장학금 예산으로 배정하고, 장학금 예산의 80% 이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

학금으로 배정하고 있어, 재학생의 약 60% 정도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또 매월 50만 원 정도씩 생활비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특별전형(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전액 학비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들은 등록금을 면제받거나 적어도 등록금의 반 이상을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돈이 부족해서 로스쿨에 못 오는 사태는 없도록 방지하고 있다. 더불어 동문들이 장학기금을 많이 내주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 동문기금 모금을 통해 가정형편상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학생들을 선발해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Q. 법전원 운영에 따른 재정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비용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본교 등록금은 법전원 중 높은 편에 속하지만 양질의 교원 확보, 엄격한 학사 운영, 교육시설 운영, 장학금 지원 등 등록금 재원 이상을 법전원 운영에 투입하여 실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법전원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등록금은 법전원의 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규모밖에 되지 않아 모든 교수들의 인건비는 대학본부의 지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Q. 원장으로서 현재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법전원장으로서 가장 큰 고민은 학생들을 공부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이 합심해서 면학분위기로 뿔뿔 뭉친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가리지 않고, 튜터링 제도, 그룹스터디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켜 가면서 열심히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양질의 변호사로 양성하는데 집중할 수 없게끔 하는 외적 요소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작년에는 법무부 차관의 발언이 기폭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그룹스터디를 해야 할 시간에 단체 행동을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올해만큼은 법전원으로의 일원화를 통해 법전원이 잘 발전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는 법전원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성원해주셨으면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돈스쿨, 금수저와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로 법전원을 흔들고, 마치 변호사 양성 트랙의 이원화가 바람직한 것처럼 법전원을 흔들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Q. 지난 4월 말,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확정됐다.

법전원 설립 이후 매년 1,500~2,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왔는데 이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며,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다. 게다가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면 1년에 1,000명 정도 더 배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전원의 왜곡된 배출구조(충분한 입학정원 확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법전원의 재정 구조는 향상될 것이고, 고비용 구조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변호사를 숫자로 선발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도 일정 커트라인을 넘으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제도로 되어 있다. 시험도 1년에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과목별로 나눠볼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력을 갖춘 것을 확인받는 시험이 됐으면 한다.

Q. 끝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선발 후양성’의 이념으로 설립된 법전원 제도는 이제 8년을 넘어서면서 정착의 단계에 들어섰다. 법전원에 입학하면 양질의 교육을 받고 훌륭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확신과 신뢰가 형성된 것이다. 무엇보다 법조인은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입법, 법의 집행, 분쟁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법전원 제도를 신뢰하고, 법전원 입학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부탁한다.

LEET 등 입시를 위한 득점 전략에만 집중하지 말고, 법학과목의 기본 소양을 준비하고, 특히 정의를 숭상하는 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창**

2005년 부서장의 성희롱 사실을 공론화하며 회사에 알렸다가 부서가 전환배치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있다. 사건의 피해자는 거대 기업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당당하게 승소했다. 이후 그녀는 로스쿨에 진학했고, 현재는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됐다.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서초동에 위치한 이은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editor. 박소희

이은의 변호사

당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직설, “예민해도 괜찮아요.”



Q 소위 '삼성맨'으로 12년 9개월을 살았다. 그 중 1/3이라는 기간을 회사와의 투쟁에 쏟았고, 끝내 승소했다. 모두가 쉬쉬하는 예민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A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은 단순한 성희롱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갑을 관계에서 오는 권력, 계급의 문제에 더 가깝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고지한 후 불이익을 받은 것도, 회사에서 나의 위치가 '을(乙)'이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을'보다는 '계(癸)'쯤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사건 이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를 냈던 것이 아니다. 두려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만 했다. 두렵지 않아서 용기 내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용기 내는 것이다.

Q 승소한 이후 회사에 남지 않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서른여덟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

A 을이 갑에게 '잘' 보이지 못했을 때, 어떻게 적이 되고 매도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그 불안정함을 믿고 다음 인생을 가야 하는데, 그렇

게 하기에는 나의 남은 생이 너무 아까웠다. 나는 견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제로도 견재했다. 그런 즈음에 로스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 처음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변호사가 되면 여전히 '나 이은의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Q 로스쿨 진학 후 <삼성을 살다>라는 첫 번째 책을 펴냈다. 공부하는 학우들 사이에서 혼자 책을 집필하는 시간이 불안하지는 않았나?

A '비법전공자'에게 법학 공부가 쉬웠을리는 없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공부 안 되고 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공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부담스러워서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다행히(?) 2학년 1학기 때 깨달았다.

채권법 수업의 과제 제출 후 교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변제충당에 대한 문제를 자의적으로, 그것도 일반인의 시각에서 해석한 내 과제에 교수님께서 몹시 놀라고 당황하셨던 것이다. 그 이후로 교수님께서 새벽까지 나를 앉혀놓고 열강(?)하셨고, 그제서야 공부에 대한 감도 잡히기 시작했다.

Q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늦깎이 학생의 로스쿨 생존법을 공유해 달라.

A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공부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교수님께 찾아가 묻고 또 물었다. 로스쿨에서는 학생들끼리 그룹핑(grouping)을 많이 하는데,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익숙한 나에게는 다소 생소한 문화였다. 스터디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 대상을 꼭 동기와 선·후배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은 교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

Q 로스쿨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은 무엇인가?

A 눈을 감고 로스쿨 생활을 떠올리면 따뜻하고 좋았던 기억들이 스쳐지나간다. 수업을 듣던 건물, 정독실, 그 사이를 오고 가던 길, 그 길에서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하지만 무엇보다도 윈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았다.

공부가 끝나고 정독실을 빠져나갈 때 오늘 하루를 빼곡하게 채운 기분이 들었을 정도다. 12년 9개월 동안은 몸속에 있는 모든 물기를 쥐어 짜내는 듯 한 느낌으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로스쿨 3년은 내 안에 고갈되었던 것들을 채워 넣는 시간 같았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앉아있는 시간의 충만감이 컸고, 한 호흡으로 3년을 갈 수 있었다. 공부를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웃음)

또 사건을 겪고 온 만학의 학생이 로스쿨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셨는지, 대다수의 교수님들께서는 내게 많은 신경을 써 주셨고 큰 힘이 됐다.

물론 지치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다. '힘들지 않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힘들었다.(웃음) 그럴 때마다 '나 이은의야!'라고 외치던 시절을 떠올렸고, 그때의 가오와 허세가 힘든 시간들을 뒷받침해주기도 했다.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서초동 법원 앞에 '변호사 이은의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A 40대가 돼서 필드에 나온 여성 변호사에게 선택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종래 귀착지점이 '개업 변호사'이기 때문에, 취업보다는 차라리 개업을 선택했다. 또 로스쿨에 들어오기 전, 12년 9개월 동안 조직에 대한 경험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다.

조직에 들어가면 어쨌든 타협해야 하고, 원하지 않는 사건도 맡아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조직을 탈피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나를 믿고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지금은 굉장히 만족감이 높다.

Q 주로 어떤 사건을 맡아서 진행 중인가?

A 다양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절반은 성폭력 사건이고, 민사 갑을 소송이 다음으로 많다. 재산권 소송, 형사 소송, 각종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 성폭력도 있고 직장 내 성폭력도 있는데,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 갑을 소송에 해당된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래로 다양한 사건을 수입했고, 그만큼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시행착오들이 쌓이고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나도 내가 보람을

먹고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들이 내게 보여주었던

존경과 감사로 인해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며,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돼 가고 있다. 99

쌓여서 노하우가 생겼고, 감사하게도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④ **벌써 두 권의 책을 발간했고,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 예방 강연은 전문 강사들을 교육하는 등 전문적인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① 하는 일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송무 업무가 70, 책을 쓰고 기고를 하는 일이 20, 강연을 나가는 것이 10 정도다.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도 가고, 여성단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각종 협회에도 간다. 가는 곳들이 다양한 만큼 주제도 각각 다르다.

때론 직장 내 성희롱 등 조직 안에서 만나는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교육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맞닥뜨리는 성폭력이나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데이트성폭력에 대한 집중 강의를 하기도 하고, 사회 안전과 공무원 청렴 혹은 내부 고발자를 향한 시선에 대한 주제도 있었다. 꿈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건네고, 성폭력을 포함하여 학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기도 했다.

로스쿨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성희롱 예방 교육도 동시에 진행하는데, 불러만 준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갈 것이다. 성희롱 예방에 대한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로서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④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나?**

① 한번은 기소 결정이 난 날 새벽부터 당사자에게 문자가 왔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려요'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문자를 보고 정말 몽클했다. 잡아주는 과정은 서로 힘들었지만, 잘 해결됐을 때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사건의 의뢰인들에게는 내가 평생의 은인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은인이 되는 직업은 대한민국에 딱 두 가지 밖에 없을 것 같다.

의사와 법조인. 법조인은 의사처럼 생물학적인 생명을 구할 수는 없지만, 정신적인 생명을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나도 내가 보람을 먹고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웃음) 그들이 내게 보여주었던 존경과 감사로 인해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며,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돼 가고 있다.

④ **반면에 힘든 순간들도 분명 있을 것 같다.**

① 모든 변호사들의 승률은 언제나 반반인데, 종종 이 소송에서 지면 내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는 분들이 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편집해서 이야기하는 의뢰인도 만난다. 사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의뢰인들도 있는데, 집착하다보니 그 화살이 변호사인 내게로 날아오는 것이다. 동료들과 우스갯소리로 액받이무녀(?)가 된 기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

④ **두 번째 저서인 『예민해도 괜찮아』는 발간 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어떻게 쓰게 된 책인가?**

① 변호사가 된 이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타

자로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위로가 많이 생겼다. 무엇보다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문제인걸까? 상대방이 문제인걸까?

성적인 농담을 들으면 듣는 이는 기분이 나빠진다. 하지만 과연 말하는 이가 그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분이 나쁠까? 아니다. 결국 예민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민한 것이 옳다.

그들에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과감하게 말해도, 즉 예민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다.

④ **성 문제의 경우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다. '예민해도 괜찮아'는 따뜻한 직설은 이 시대 여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가?**

① 성 문제의 경우 대상이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사실상 권력 문제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 남성 또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갑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을도 이런 문제에 과민하지 않고, '이건 아닌데' 싶을 때 '부장님 저 조금 불편해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소통구조에서는 그게 힘들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바뀌는 것이다.

또 '예민함'의 문제는 단연 성희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청년의 문제, 빈곤의 문제, 노동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한민국은 곳곳이 끓어있어 예민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민해야 할 곳에 예민하지 않고 쉬쉬하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병들고 나빠지는 것이다.

④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① 변호인으로서 송무에 집중하려고 한다. 매년 딱 한명이라도 정말 억울한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 줄 수 있다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꽤 할 만한 직업이 아닐까? 종교는 없지만 아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웃음)

장기적으로는 '윈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싶다. 단순히 법률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든 '억울함의 영역'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말이다. 아직 어떤 형태가 될지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우리의 품에 날아든 날개 잃은 나비와 같은 사람들을 잘 보듬어서, 다시 날려 보내줄 수 있는 공동체의 형태였으면 한다. **창**

“예민해도 괜찮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대기업 삼성을 상대로 싸워 이긴 최초의 여성이 된 후, 37살에 전남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가 치열하게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되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 대기업을 비롯한 힘센 조직의 갑질로 고통받은 사람들, 청춘의 열정을 악용당한 젊은이들의 상담과 사건 수임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예민해도 괜찮아』는 30대 늦깎이 학생에서 40대 변호사가 되기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직접 말았던 여러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시대 차별과 갑질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그녀는 불운한 사고를 유익한 사건으로 반전시킬 비장의 카드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나아가 인생을 조금 더 산 선배로서, 남녀가 공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날카롭지만 따뜻한 직설로 전한다.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데 공부까지 잘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엄친아'라고 부른다. 주변에는 없지만 이상하게 늘 엄마 친구 아들이었던 그 캐릭터 말이다. 윤용석 학생의 첫인상도 그랬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흰철한 키(심지어 어깨깡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깽뚫한 태도도 눈에 띄었는데, 그건 아마도 경찰 근무를 하던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 때문일 것이다. 법학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는 여전히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전히 멋지다. editor. 박소희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6기 윤용석

인간미를 잃지 않으면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아이를 키워서 초등학교생쯤 되니까 다른 부모에게 보내는 기분이랄까.(웃음) 또 민원상담이나 수사를 할 때에는 형법 지식뿐만 아니라 민법 지식도 필요한데, 민법 지식이 전혀 없는 나로서는 많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사실 형사법 지식도 없었다.(큰웃음).

경찰 조직은 다방면을 두루 경험할 수 있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는 힘든 구조다. 무엇보다 민원인을 상담할 때 말문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온전한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Q 로스쿨 준비는 어떻게 했나?

A 경찰업무를 하면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는 건 직무유기다.(웃음) 남들처럼 학원도 가고 문제도 많이 풀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주중·주말을 가리지 않고 출근해야 하는 근무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시험일과 근무일이 겹칠까봐 조마조마했고,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의 문제를 떠나 시험장에 갈 수 있을지 더 걱정했을 정도다. 운 좋게도 시험장에 갈 수 있었고, 로스쿨에도 입학할 수 있었다.

Q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입학했다고 하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다.(웃음) 그들을 위해 소소한 팁이라도 알려 달라.

A 법학적성시험의 경우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잠재적인 적성을 갖고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쌓는다는 자세보다는 우선 문제 유형에 적응하겠다는 마음으로 부담없이 시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로스쿨을 진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A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이를테면 경찰은 기초 단계부터 검찰에 송치하기까지의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검찰이 기초·불기소를 결정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일 뿐 구속력이 전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송치까지다.

Q 회계사 자격증은 왜 취득한 것인가?

A 세상에 나와 보니 사회생활을 등글게 잘하는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키 큰 사람이었다.(웃음) 그때부터 내가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마침 당시에는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고, 회계수사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분야로 공부 방향을 정하였고, 목표의식을 갖기 위해 CPA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 같다.

Q 직장에 다니다가 로스쿨에 온 소감은 어떤가? 직장생활에서의 해방감도 있었겠지만, 부담감도 컸을 것 같다.

A 매일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때로는 밥도 급하게 먹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로스쿨에 와서는 매 순간 행복했다. 물론 부담도 컸다. 휴직을 하고 로스쿨에 온 것이라면 부담감이 덜 했겠지만, 나는 아예 퇴직을 하고 온 경우였다.

또 당시에는 로스쿨의 장학제도가 이 정도로 잘 되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쳐서 1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거기에다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기 때문에, 다시 국가에 상환해야 하는 돈도 꽤 많았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Q 1학년 때에는 두학기 모두 전액장학금을 받고 2학년 때에도 외부장학금을 받았을 만큼 모범적인 학생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새롭게 로스쿨 생활을 시작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A 학교 성적, 학점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1학년 때부터 '어떤 교수님은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준다더라', '이 교수님 시험의 답안지는 이렇게 작성해야 좋다'는 식의 공부는 로스쿨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정작 본인의 지식이 되는 것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변호사시험 준비할 때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조금 후회 중이다. 물론 교수님께 맞추는 것이 학생의 도리지만, 교과서를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학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Q 대형로펌 '울촌'에 이미 취업이 확정됐다. 채용 프로세스를 궁금해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A 1학년 겨울 방학 때 세 군데의 로펌에 인턴을 나가게 됐다. 울촌은 그 중 한 곳이었었는데, 처음부터 채용 전체 인턴이었다. 2주 동안 실습한 후 마지

막 금요일에 1차 면접을 봤다. 외국어, 자격증, 과목별 성적, 학교생활, 시사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2차 면접에서는 비법학도여서 그런지 법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다. 법학 전공자들에게는 오히려 인성·시사 질문이 많았다고 한다. 내 경우에는 아예 화이트보드를 가져다 놓고 그림을 그려가며 case문제를 설명했는데, 아마 다양한 대답을 들어보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Q 졸업 후에는 어느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인가?

A 인턴을 나갔을 때 조세그룹에 배정돼서 일을 했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당시 담당 변호사님께서 '훌륭한 조세변호사는 없고 훌륭한 변호사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아마 먼저 훌륭한 변호사가 돼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당연히 다방면에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야겠지만, 지향점을 갖고 일 한다면 조세분야와 형사분야가 맞아있는 조세형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꿈은? 동기들에게도 한 마디 부탁한다.

A 어머니께서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건강과 인성이 가장 중요하고 공부는 그 다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어머니의 말씀처럼 인간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웃음)

혼자서 공부해야 하는 사법시험과 다르게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든든한 동기들이 있다는 것이다. 공부할 양도 많고 어려운 법학 공부지만, 동기들이 있기에 큰 힘이 된다. 그런 점에서 성균관대 로스쿨 6기 학우들과 특히 스터디원들, 농구부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 [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국 12개 대학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및 입학전형 소개를 비롯하여 입시 준비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순회 설명회 현장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일정

일정	시간	장소	지역
4월 4일(월)	16:00~18:00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501호)	서울
4월 6일(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B1층)	제주
4월 8일(금)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대회의실(1층)	부산
4월 11일(월)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Art Convention Hall(1층)	대전
4월 15일(금)		숙명여자대학교 순현관(511호)	서울
5월 3일(목)		아주대학교 종합관 대강당(1층)	경기
5월 4일(수)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5층)	서울
5월 10일(화)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1층)	전북
5월 11일(수)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문원강당(1층)	충청
5월 12일(목)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대회의실(1층)	서울
5월 17일(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111호(강당)	광주
5월 18일(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6호)	경북



여기서 잠깐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이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다양한 학부·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법전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적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법전원 입학전형 필수요소로 활용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개최하는 첫 번째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가 열렸다. 수 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규모의 강의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법전원 진학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설명회의 첫 번째 순서는 개최 대학의 법전원 교수 혹은 인근에 위치한 법전원의 교수가 맡아서 진행됐다. 법전원의 입학정원과 시설을 비롯해 실무교육, 등록금과 장학금, 특별전형제도 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2016학년도 합격자 자료와 원서접수 경쟁률 등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통계자료도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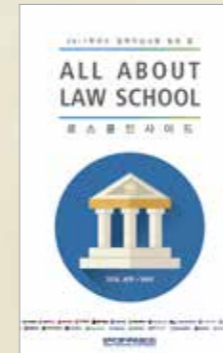
이어 설명회의 핵심인 법학적성시험에 관한 설명이 진행됐다. 설명을 맡은 법전원협의회 연구사업단 연구위원은 법학적성시험은 수험생의 추리·논증 비판 능력, 창의력, 표현력 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인문, 사회, 과학기술, 법규범의 영역에서 고루 소재를 찾아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로 꽉 찬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강의실



영역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학생들



설명회 당일 배포된 책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학적성시험 예시 문항

연역추리 (연역논증)	귀납추리 (귀납논증)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감기에 걸린 적이 있다. 철수는 사람이다. 따라서 철수는 감기에 걸린 적이 있다.
✓ 논증의 목적: 결론의 참을 확립 또는 정당화	✓ 논증의 힘: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을 뒷받침하는(정당화하는) 관계의 힘

법학적성시험 문제의 유형



법전원 학생들의 실무수습 기관



타전원대학원과 등록금, 장학금 비교

설명회 현장 이모저모

이번 설명회에는 개최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의 학생, 학부모까지 참석해 그야말로 문 전성시를 이뤘다. 자리를 잡지 못한 참가자들은 계단에 앉거나 서서 듣기도 했으며, 준비해 온 녹음기로 녹음을 하거나 노트북으로 필기를 해 가는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현장 인터뷰



김민정 학생
(성신여대)

Q. 리트설명회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A. 저희 학교는 로스쿨이 있는 학교가 아니라서, '고시반', '로스쿨 준비반' 등이 따로 있거든요. 로스쿨 준비반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설명회 소식을 보고 참석하게 됐어요.

Q. 설명회가 도움이 됐는지 궁금해요.

A.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작년에 경험 삼아서 리트 시험을 한 번 쳤었는데, 아무래도 막연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시험 전에 영역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들었고, 문제도 다 같이 풀어볼 기회가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추리영역이 너무 어려운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배우고 가네요. 작년보다 더 잘 볼 거 같아요.(웃음)

Q. 가고 싶은 로스쿨은 어디예요?

A. 아무. 뽑아만 주시면 어디든 다 가고 싶죠. 일단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리트 시험부터 본 후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Q. 리트설명회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A. 딸아이가 로스쿨에 입학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수업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왔어요.

Q. 자녀분의 로스쿨 진학 결정을 응원해 주셨나요?

A. 네. 본인이 결정한 사항이니까, 엄마인 저는 응원할 수밖에 없지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로스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력 없다는 평가를 받을까 봐요.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잖아요.(웃음) 상급기관에서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해요.

Q. 리트설명회 어떠셨어요?

A.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아서, 공부하는 딸아이가 직접 와서 들었으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설명회 개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순희 어머니
(주부)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요일정 안내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8월 28일(일)에 시행된다. 시행에 앞서 7월 5일(화)부터 14일(목)까지 시험을 위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 자	내 용
2016.7.5(화)~14(목)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원서 접수
2016.8.9(화)~28(일)	수험표 교부
2016.8.28(일)	법학적성시험 시행일
2016.9.20(화)	성적 발표
2016.9.23(금)~24(토)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장소: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2016.10.4(화)~7(금)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 접수

※ 법학적성시험 설명 영상 및 자료집은 설명회 전체 일정 종료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http://info.leet.or.kr/>)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2015년 8월 23일 법학적성시험(LEET)을 시작으로 2016학년도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진행했다. 지원자의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논술 및 면접,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결과 총 2,117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통계로 보는 2016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총 합격자 수 2015학년도 **2,084** 명 2016학년도 **2,117** 명



특별전형 입학생 수 2013학년도 128명 → 2014학년도 132명 →



2015학년도 133명 → 2016학년도 139명(6.57%)

※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유지할 경우 지속적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성 별 남성 **1,192** 명(56.31%) 여성 **925** 명(43.69%)



자교 / 타교 자교출신 **523** 명(24.70%) 타교출신 **1,594** 명(75.30%)



법학 / 비법학 법학사 **773** 명(36.51%) 비법학사 **1,344** 명(63.49%)



최종학력별 대학교 졸업자 **1,056** 명(49.88%)



대학교 졸업예정자(2016년 2월) **919** 명(43.41%)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이상 **142** 명(6.71%)

연령별



구 분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11	19	30	1.42
23세 ~ 25세	241	424	665	31.41
26세 ~ 28세	477	291	768	36.28
29세 ~ 31세	230	105	335	15.82
32세 ~ 34세	106	51	157	7.42
35세 ~ 40세	104	30	134	6.33
41세 이상	23	5	28	1.32
계	1,192	925	2,117	100

※ 나이산출 : 2015 - 출생년도 + 1 또는 2016 - 출생년도

출신계열별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 계			비율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법학계열	469	258	727	32	14	46	501	272	773	36.51
사회계열	161	203	364	15	14	29	176	217	393	18.56
상경계열	207	150	357	10	10	20	217	160	377	17.81
인문계열	112	165	277	11	13	24	123	178	301	14.22
공학계열	83	18	101	4	0	4	87	18	105	4.96
사범계열	23	31	54	3	1	4	26	32	58	2.74
자연계열	22	15	37	2	3	5	24	18	42	1.98
신학계열	4	4	8	1	1	2	5	5	10	0.47
예체능계열	2	6	8	0	2	2	2	8	10	0.47
의학계열	6	3	9	0	0	0	6	3	9	0.43
농학계열	6	1	7	0	0	0	6	1	7	0.33
약학계열	4	2	6	0	0	0	4	2	6	0.28
기 타	12	11	23	3	0	3	15	11	26	1.23
계	1,111	867	1,978	81	58	139	1,192	925	2,117	100

직업군



공무원 19명, 의료인(의사, 한의사 등) 7명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회계사 19명, 노무사 12명, 변리사 9명의 전문자격 소지자도 확인되었다.

※ 직업 및 전문자격 소지현황은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

'16.04.15(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취지

-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전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어야 함.
 - ※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건의문(2004년)
-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항에 의하면, 시험의 합격은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2. 그동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합격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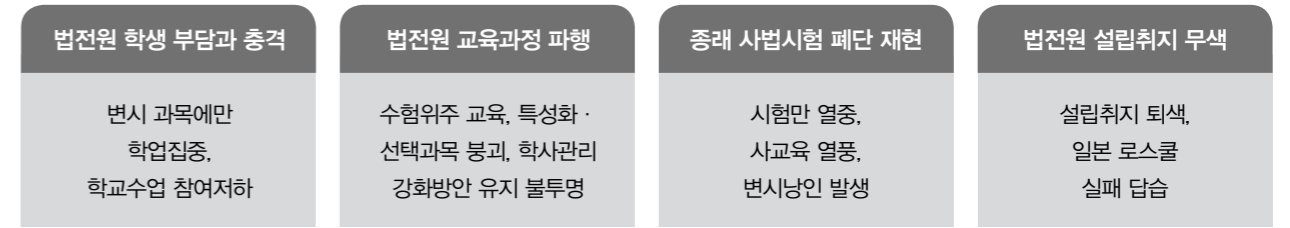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시 전년도 합격인원, 응시생의 실력수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임.

구분(발표일)	응시자	합격자	불합격자	합격기준점수(1,660만점)	비고
제1회(2012.03.23)	1,665명(100%)	1,451명(87.15%)	214명(12.85%)	720.46점	4년간 증감추이 응시자 896명(53.8%)이 증가한 반면 합격자 114명(7.9%)만 증가함.
제2회(2013.04.26)	2,046명(100%)	1,538명(75.17%)	508명(24.83%)	762.03점	
제3회(2014.04.08)	2,292명(100%)	1,550명(67.63%)	742명(32.37%)	793.70점	
제4회(2015.04.10)	2,561명(100%)	1,565명(61.11%)	996명(38.89%)	838.50점	

- (응시인원의 증가) 지난 4년간 응시자는 896명(53.8%)가 증가했으나 합격자는 114명(7.9%)가 증가하는데 그쳤음.
- (응시생의 실력수준 향상) 합격기준 점수는 매년 상승하여 제4회에서는 838.50점으로 제1회때보다 무려 118.04점이 상승하였으며, 면과락자임에도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제4회에서 641명으로 제1회의 21명보다 30배가 증가함.
- (신규법조인 수 감소)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급격히 줄어들어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입학정원의 75%인 1,500여 명으로 묶여 있어 신규 배출 법조인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신규법조인 수 : 2012년 2,481명, 2013년 2,364명, 2014년 2,336명, 2015년 2,074명)

3.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점

- 변시험합격률 1회 87.15%, 4회 61.11%로 26.04% 하락 추세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 양성에 어려움 초래

4. 양질의 변호사 배출을 위한 법전원의 노력

- 엄정한 학사관리로 교육의 질 확보, 졸업생의 실력수준 관리

- 엄정한 상대평가 실시
- 상대평가시 학점인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배분 비율 설정
- 학사경고 및 유급기준 상향조정, 졸업시험 기준 강화

- 2013학년도 입학생 2,099명 중 유급 83명, 미수로 129명으로 총 212명 탈락

-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을 통한 실력 향상 기여

- 2011년 연 1회 시행에서 2013년부터 연 3회 확대 실시
 - ※ 출제·시행경비 : 정부 예산지원 없이 각 법전원에서 경비를 부담
-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출제위원 구성(약 100여 명)
- 출제 가이드 라인 제시, 시행 후 평가·활용
- 법전원 졸업시험과 연계, 학사관리 강화에 기여
졸업 탈락생은 매년 증가(2011학년도 28명, 2012학년도 40명, 2013학년도 90명)

- 법전원 실무역량 강화

- (리걸클리닉)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제공, 공익사건의 발굴·수행, 학교별 특성화연계
- (실무수습) 법원, 검찰, 국회, 국세청, 법무법인, 기업 등 실습
- (경연대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 특허법원 등 모의재판 참여

- 실무교수 1:1 개별지도, 튜터링제도 등 다양한 학습방법 개발, 운영

5.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예측 가능한 적정수준의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합격률 결정에 대한 고려사항

- 법전원의 엄정한 학사관리
-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 확대로 계속적으로 질 향상 기여
-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 추이 감안
- 타 자격시험과의 합격률 형평성 고려(2014년 응시자대비 합격률 : 의사 93.8%, 치과의사 97.9%, 한의사 94.2%)
- 법률시장 개방 대비, 다양한 직역 진출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 필요
- 변호사시험 출제시 난이도(지나친 긴 지문)를 높여 선발인원을 낮추려는 의도에 대한 응시생들의 의혹 제기 (출제 범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비공개)
- 법전원 교육과정 연계 부재, 중요판례보다 생소하고 지엽적인 판례 출제

□ 적정 수준의 합격률 보장시 기대효과

-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의 관심이 고조되어 우수 법조인력 수급 가능
- 법전원의 다양한 교과과정 이수 가능(특성화과목, 선택과목)
- 법전원생의 공익활동, 리걸클리닉 활성화, 외국대학과 연계된 교육과정 충실
-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 제5회 변호사시험(2016년) 적정 수준의 합격자 수

- 법전원이 졸업생을 배출한 최근 4년(2012-2015년)간 신규 법조인 수는 평균 2,300명
- 2016년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300명이므로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1,700명을 합격시켜도 2016년 신규 법조인수는 2,000명으로 예년의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임.
- 따라서 제5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적어도 1,700명 이상이어야 함.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응시생의 실력수준, 응시인원의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0명 이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붙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참고자료

① 변호사시험 면과락자 현황

제4회 면과락자이나 불합격자는 641명으로 제1회 21명보다 30배 증가함.

(단위:명)

구분	응시 인원	합격점수	과락		면과락자	합격인원	면과락이나 불합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제1회	1,665	720.46	193	11.60%	1,472	1,451	21	0.10%
제2회	2,046	762.03	343	16.80%	1,703	1,538	165	8.10%
제3회	2,292	793.7	342	14.90%	1,950	1,550	400	17.50%
제4회	2,561	838.5	355	13.80%	2,206	1,565	641	25.00%

② 신규 법조인 배출인원 현황

최근 4년간 신규법조인 평균 배출인원 2,300여 명임.

(단위:년,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법연수원 수료자	1,030	826	786	509	300	200	150	100	50	-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	1,538	1,550	1,565	1,700	1,800	1,850	1,900	1,950	2,000
합 계	2,481	2,364	2,336	2,074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③ 변호사시험 통계 관련 오류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과 법전원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 입학 후 3년 만에 바로 응시한 경우 초시로 분류하고, 이후 재시, 삼시, 사시로 구분함.

- 그러나,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이 5년내 5회임에도 불구하고 휴학 등을 고려할 때 '육시, 칠시'가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함.

〈예시〉 2013학년도 입학생(57기)의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년도	일반적 개념			법무부 개념		
	휴학 안함	1년 휴학	2년 휴학	휴학 안함	1년 휴학	2년 휴학
졸업년도	2016. 2	2017. 2	2018. 2	2016. 2	2017. 2	2018. 2
2016년	초시(1)	-	-	초시(1)	-	-
2017년	재시(2)	초시(1)	-	재시(2)	재시(1)	-
2018년	삼시(3)	재시(2)	초시(1)	삼시(3)	삼시(2)	삼시(1)
2019년	사시(4)	삼시(3)	재시(2)	사시(4)	사시(3)	사시(2)
2020년	오시(5)	사시(4)	삼시(3)	오시(5)	오시(4)	오시(3)
2021년		오시(5)	사시(4)		육시?(5)	육시?(4)
2022년			오시(5)			칠시?(5)

※ 1회~3회는 일반적 개념을 적용했으나 4회는 법무부의 새로운 개념을 적용,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이 소수만 증가하는 결과 초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약속장학금' 제도 시행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원우



질문. 김하영 학생
대답. 이원우 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약속장학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법전원 학생들은 장학금을 신청할 때 "졸업 후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면 후배들에게 내가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약속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약속증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지금의 장학금 수혜자가 미래에는 후배들의 든든한 '키다리아저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끌기 위한 것이다.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대 법전원은 가계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금 예산을 꺾기적으로(200%) 늘렸다. 이번 학기의 경우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비율이 45%로 사실상 반값 등록금에 근접했다.

장기적인 목표는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약속장학금' 제도는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 놓고 법률가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새로운 장학금 제도에 쏟아지는 학생들의 관심과 공금증은 당연한 일이다. 기자 역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에 앞장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원장을 만나 직접 공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약속장학금'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나?

이 오래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상해왔다. 독일의 부체리우스 로스쿨(Bucerius Law School)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부체리우스 로스쿨은 '세대 간 계약'이라고 하는 매우 독

특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 학교는 사회지도층을 양성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곳으로서 학비가 매우 비싸다. 하지만 이 학교 학생은 누구나 원하면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일정 소득(3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천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10년간 소득의 9%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는데 이것을 '세대 간 계약'이라고 부른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기부하게 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그 반대다. 여기엔(우리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다. 물론 중간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줄어들면, 잠시 기부를 정지할 수도 있는 등 제도는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원래 2014년에 학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도입하려던 제도인데 우리나라 상황과 정서를 고려해 그동안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김 대역장학금(student loan)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 약속장학금 제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나는 선배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으니, 후배들은 내가 가르친다'는 데 있다. 선배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선배들에게 빚을 갚는 게 아니다. 그 대신 후배들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세대 간에 약속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돈을 대출했다가 나중에 상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역장학금과는 다르다.

또 '약속장학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약속증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약속증서는 '공동체로부터 혜택을 받은 만큼 이를 환원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담고 있는 것이다.

김 학생들에게 전달된 공지사항을 보면 "일정 소득 분위 이상의 약속증서 제출자는 장학금 배정 시 우선 고려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는 것인가? 반대로 약속증서를 내지 않으면 장학금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나?

이 장학금은 학생의 경제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소득분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계 형편도 고려한다는 원칙도 그대로이다. 예를 들어 가계 소득 하위 10% 등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면 약속증서

를 안 냈더라도 아마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다. 하지만, 가계 소득 상위 50%에 들어가는, 즉 6분위 이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약속증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상당히 고려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약속증서를 제출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웃음)

김 '약속장학금' 제도가 정착하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

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의식이다. 나는 장학금 수여식에 갈 때마다 "장학금이란 세대 간의 계약이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걸 환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환원 의무에 대해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반드시 금전의 형태로 환원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어떤 졸업생이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하는데 소득이 너무 적고 불안정해서 장학금 기부가 힘들 수 있다. 그런데 그 졸업생은 공공부문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식의 환원이다. 하지만 민간 섹터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졸업생의 경우에는 충분히 금전으로 환원할만한 지위에 있다. 예컨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했다라도, 졸업 후 대형 로펌에 입사하면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 예를 들어 그 졸업생이 세후 연봉 1억 원을 받는다면, 금전으로 환원할 만한 충분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교는 쪽 가계 소득 하위 50% 이하 학생들 모두에게 전액장학금과 사정에 따라 월 30~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밖에도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급하려면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그 돈을 공급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일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그 누군가는 바로 여기서 혜택을 본 사람들, 졸업생들이라고 생각한다.

김 '약속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 우선, '약속장학금'은 장학금 재원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필요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재학생 인원은 고정되어 있는데, 졸업생의 숫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

난다. 졸업생들이 조금씩이라도 기부를 약속한다면 결국에는 후배 모두에게 전액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대 법전원은 장학금의 60%를 외부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외부 장학금의 종류와 총 규모는 늘고 있지만, 요새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각 재단에서 기부하는 금액은 점점 줄고 있다. 새로운 장학금을 모금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유지해오고 있지만 장학금제도가 지속가능한 것이 되려면 새로운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후배들을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서 외부인에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것이니 투자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쾌척한 돈과 더불어 그에 담긴 뜻을 받는 일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마음에 새기길 기대한다. 예컨대 우리 학교의 교비로 나온 장학금에는 학교의 정신, 세금에서 나온 장학금에는 국민공동체의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장학금을 받을 때, 학생들이 '우리 공동체가 왜 나에게 혜택을 줘서 이 공부를 하게 해 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공동체가 나를 돕는 것은 내가 다시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 교수님도 학생 시절에 장학금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다. 장학금과 관련한 에피소드는 없나.

이 나도 포스코(포항제철)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했다. 포스코 창업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장학생들을 1년에 한두 번 불러서 저녁을 사주셨다. 그 자리에서 장학생 중 하나가 "제가 장학금을 받고 있으니 나중에 꼭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졸업하자마자 당장은 어렵고 내가 자리 잡히고 나면 하겠다"고 말했다더니, 박 명예회장이 "그건 안하겠다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난다.

"사람은 평생토록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산 다음에 기부하겠다고든가, 차를 산 다음에 기부한다는 건 안한다는 것이다. 정말 기부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전셋집에 살 때부터 기부를 하지, 집 산 다음에 기부하겠다는 사람은 집을 사고 나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해서 기부를 못한다. 그런 사람에게

평생 남을 위해서 기부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정말 기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장학제도도 이런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손길을 내밀어주는 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그 손길을 내미는 누군가가 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는 게 로스쿨 출신들이 잘 되는 길이기도 하지 않나. 무엇보다도 동문들은 후배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제일 큰 언덕이기 때문에 동문들이 장학금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 학생들이 이 취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기부를 하는 것은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득이나 손해냐를 따지면 기부를 할 수 없다. 순수한 마음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정환경 때문에 학업에 진념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내는 것이다. 그게 제일 핵심이다. **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하영



'약속장학금'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약속의 장학금, 상당히 파격적으로 보입니다. 기수혜자들이 일정 부분 다시 후원을 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든다는 것, 늘 혼자 머리로만 생각하던 것인데 정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네요.”

- 서울대 로스쿨 학내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서 발췌

“저는 장학금 받고 감사하게 다니고 있었는데, 이런 장학금 약속 기회가 되면 정말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자기 피 같은 돈을 저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수혜자들이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울대 로스쿨 학내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서 발췌

“약속장학금의 취지 자체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학금이 처음 받게 되었을 땐 굉장히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들지만, 계속해서 받다보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무뎠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약속장학금 증서를 쓰면서, 장학금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고, 그 혜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막연하게 '나중에 성공하면 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기부에 대한 계획을 고민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작고 꾸준한 기부 문화가 부족하고, 기부는 큰 금액을 주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약속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조금씩 계속해서 환원하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좋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습니다. 약속증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받은 장학금을 환원하는 계획을 서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의 대출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에 직접 갚는 것은 아니니 대출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받은 금액을 나눠서 갚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면, 취지를 큰 틀에서 서약하는 것으로 하든가, 약속증서의 내용을 각자 자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지를 살리면서도 잡음을 없애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울대 로스쿨 2학년 A씨(男·26세) 인터뷰

그밖에도 지면의 제약 상 모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약속장학금' 제도 시행과 관련해 학생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약속증서를 기꺼이 제출하겠다는 학생들 중에서도) 약속증서의 내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부담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다른 형태의 학자금대출은 아닌지 의문을 갖는 경우도 상당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원활한 소통과 홍보를 통해 '약속장학금' 제도가 그 취지를 살려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로스쿨 입시 파문과 法曹 충원 선진화



오영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교육부가 지난 7년간의 로스쿨 입시(入試)를 전수조사하고 부정입학 사례를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느 제도나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시 제도도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입시부정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다.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입시부정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사소한 규정 위반 정도의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학부형이 부정청탁을 하고 입시 담당자가 지원자의 입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를 했거나 입학 사정(査定)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개 정도에 머무를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현재 어느 로스쿨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는 행위가 성공하기는 어렵게 돼 있다. 필자의 경험상 적어도 로스쿨 입학 담당 교수나 직원들이 그런 정도까지 오염됐거나 부패되지는 않았고, 로스쿨 입시 제도도 그렇게까지 허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필자가 로스쿨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입시부정으로 직원이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특별전형 합격자 중 한 명에 대해 제보가 있었고, 조사 결과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입학 사정 당시 지원서류나 증거 자료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서류들의 진위를 학교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인적·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고를 받은 직원이 오히려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었다.

이번에 입시부정으로 문제 되는 사례 대부분도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법조인인 부모의 직업과 실명까지 기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부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경우도 많고, 설사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입학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시 사무 전체를 무효로 할 사유까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의 로스쿨 제도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인 로스쿨을 교육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풀었기 때문이다. 모든 로스쿨은 단 한 번도 로스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해본 적이 없다. 학생 정원, 교수의 수, 로스쿨 교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호사시험에 관련된 사항 등을 대학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법조인들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번 로스쿨 입시 제도의 문제나 해결책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교육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로스쿨 입시 제도나 로스쿨 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으니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는 대실패라고 평가되는 일본의 로스쿨 제도보다도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사시(司試)를 존치해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사시를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종래와 같이 선발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현대적 흐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법조인들도 이제는 시대에 맞는 선진적 사시 제도를 제시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법률 문화와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건설적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창**

출처 : 문화일보 2016. 04. 22

약력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現 한국사법교육원 이사
現 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원 원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출제위원
서울대학교 관선 이사장, 서울보호관찰심사회 위원, 검찰개혁위원회위원,
법무부 법무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무엇으로 선발할 것인가? - 객관적 점수에 대한 환상



박도순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선발시험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고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산출된 점수 즉 정량점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믿음이 있다. 필기시험의 결과가 점수로 표시되면 그 점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고 점수 자체에 승복한다. 그런데 정량점수에는 불가피하게 측정오차가 있기 때문에 정량점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기대만큼 높지 않다. 아주 공들여 설계한 시험에도 측정오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지능검사의 측정오차가 ±5점에서 10점에 이르고 있다. 이 말은 시험점수 결과에서 10점에서 20점 차이가 나는 사람들의 지능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우연적인 차이라는 뜻이다.

법학적성시험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보안상의 이유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한 수정·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지능검사 보다 커질 것 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점수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은 붙이고 다른 사람은 떨어뜨렸다면 그 선발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떨어진 사람이 선발시험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이라도 제기한다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량점수에 측정오차가 있다는 사실은 법학적성 시험에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와 학업을 잘 할 잠재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것 한가지로만 입학 전형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도입의 주요 목적의 하나가 다양한 영역의 인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법학적성 시험은 올바른 입학 전형을 위한 여러 가지 평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학 적성시험 성적을 절대적인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첫째, 측정오차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고 등급을 사용하는 것이다. 측정오차 내의 점수에 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수, 우, 미, 양, 가’ 나 ‘A, B, C’로 평가하는 것은 세밀한 점수 산출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라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평가하면 공정할 것 같지만 실상은 역

지를 부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위해 절대평가에 근거한 등급제의 도입을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의 방법으로 면접 방법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입학 전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잘 구조화된(어느 정도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면접보다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면접이 가장 오래된 평가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업 성과와 상관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원론적으로 말해 적성시험은 학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성시험 성적과 학업 성적과는 상당부분 큰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학에서의 성적(소위 내신 성적)과 적성시험의 성적이 대학원에서의 학업 성과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가를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언제나 적성 시험 성적 보다는 내신 성적과의 상관이 높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성시험은 한 번만 시험 본 결과이고, 대학성적은 여러 번 시험 본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성시험의 내용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 즉 법학 지식과 직접 연계 시키면, 적성시험의 대학원 학업 예언력은 크게 높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법조인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위배될 수밖에 없다. 다만, 대학에 따라, 선수과목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의전원 전형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를 통해 법전원의 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형제도의 수정은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 한다면, 법학적성시험 점수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도 잘못이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입학 전형에서 정량 지표의 하나로 이용하면 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을 위해서는 면접의 활성화는 물론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전형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창**

약력

現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現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

- 2002.11 제36대 한국교육학회 회장
- 1998.01 제1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 1996.09 제14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 1995.03 제7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 1992.11 제5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 前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前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로스쿨 입시 다양성도 중요하다



천경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3년간 입학생 6000명 중 자기소개서로 부모를 알 수 있었던 사례가 5건이었다니 소문보다는 적지만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공정성'이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를 건드린 탓이다. 자칫 미래의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변질 것 같아 걱정이다. 그런데 로스쿨 입시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 중에는 선발 주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라기보다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다 보니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선발에서 '공정성'은 매우 소중하지만 유일한 절대적 가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정성을 위해 자기소개서나 면접 따위의 주관적 평가를 제거하고 학점,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영어 등 정량지표로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동시에 일부 로스쿨이 나이 많은 지원자를 차별하고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의 어린 학생만 뽑는다고 비난한다.

두 주장은 명백히 모순된다. 정량지표를 중시할수록 점점 더 SKY 출신 어린 학생들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객관적 정량지표만으로 선발했을 때의 결과를 추산해 봤더니 실제보다 27세 이상 합격자는 줄고 24세 미만 합격자는 늘어나며, 심지어 SKY 상경계 졸업생이 합격자의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경험과 성숙한 가치관을 중시하는 정성평가로 그런 경향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 공정성과 다양성이 상충하는 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왜 쓰느냐는 의문도 많다. 서울대의 경우 부모 직업을 기재하게 한 적은 없고, 다만 지원자들이 지원 동기를 밝히다 보니 부모 직업이 자연스럽게 언급된 경우가 있을 뿐이다. 그럼 지원 동기를 왜 물어보는가? 3년 만에 법률가 자격을 따야 하는 법학 공부는 결코 쉽지 않다. 법률가가 되려는 동기가 희미하면 과에서 수석을 했던 '공부 귀신'들도 나가떨어지기 일쑤다. 평생에 걸쳐 좋은 법률가가 될 싹수도 그 동기에서 조금씩 드러난다. 비록 처음에는 지어 낸 동기일지라도 반복해 스스로 설득되면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정설이다. 공정성만 고려하면 불필요하고 오히려 의심을 살 여지도 있지만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동기를 묻더라도 부모 직업은 못 쓰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처럼 간단치는 않다. 지원 동기를 쓰는 과정에서 유복한 환경만 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최근 합격생 중에도 "임금이 체불돼 고생하던 용접공 아버지"가 기텔 곳은 노동법전문을 경험하고 노동 전문 변호사를 꿈꾼 경우, "트럭 기사인 아버지가 실질은 노동자이지만 형식은 개인사업자라서 겪는 모순"을 보며 제도적 대안을 고민한 경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성장 배경이나 부모 직업을 일절 못 쓰게 했다면 이런 사연도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학점과 리트에 따라 멍텅명텅 잘라 냈을 것이다. 그렇다고 '좋은 직업'의 기재만 금지하기도 어렵다. 아버지가 검사라고 쓰면 안 되고 소방관은 되는가? 기업 임원은 안 되고 미화원은 되는가? 일일이 구분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구분 자체가 직업의 우열을 암시하는 게 돼 비교육적이다. 명확한 법령이나 지침도 없다. 그러니 많은 학교에서 고민 끝에 직업 기재를 아예 금지하지는 못한 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만을 금했고 그 허술한 틈을 타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부모의 좋은 직업을 기재해 합격률이 높아진 것도 아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총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25.5%였는데 부모가 법조인이라고 기재한 지원자의 합격률은 25.2%였다. 표본이 작아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하지만 부모가 '법학 교수'라고 기재한 경우는 15.4%로 가장 적었다. '무직/일용직'이라고 기재한 경우는 26.1%, 아무 직업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27.0%였다. 부모의 직업은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미국 로스쿨입학위원회(ISAC)의 자기소개서 작성 표준지침에서는 본인에게 소중했던 성장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각 로스쿨은 교육부의 지적과 여론의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입시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원은 물론 직업도 못 쓰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면접 비중을 줄이고 합격자의 주요 정량지표를 공개하는 것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유일한 가치는 아니라는 점이다. "의심받기 싫으니 정량지표만으로 뽑겠다"는 로스쿨이 늘면 정량지표를 올리는 데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유복한 집 자제들 비중이 더 커지고, 법률가 집단은 지금보다 더 획일화될 것이다. 진정한 잠재력과 다양성을 평가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좋은 인재를 발굴하려는 순수한 노력마저 중단해서는 안 된다. 맹목적인 비난보다 현명한 비판이 필요한 이유다. **창**

출처 : 중앙일보 2016. 05. 09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5.3 ~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00.5 ~ 201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미국 Duke Law School졸업(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개업변호사의 방

법률사무소 신세계
나영주 변호사

오늘은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군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반이네요. 보통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하고, 저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을 합니다. 가끔 같이 일하는 사무장과 여직원 보다 일찍 나오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좀 잡아야겠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농담입니다). 고즈넉한 텅 빈 방안에 앉아 있으면 창밖으로 비치는 내 이름이 걸린 간판을 새삼스레 바라보곤 합니다. 아직도 개업을 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호기롭게 개업을 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전 1년은 고용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고용변호사 시절과 비교했을 때 개업변호사의 삶은 상전벽해입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세계에 고독히 존재한다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엔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알다시피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은 드뭅니다. 대기업 임원, 기관의 장(長), 교수, 변호사 정도겠지요. 그것도 30대 젊은 나이에 비록 몇 평 남짓이지만 자기만의 방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변호사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고용변호사도 배정된 방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변호사와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용변호사 시절 ‘방’은 일하는 장소, 혹은 대표변호사의 눈을 피해 피신한 안식처(?)정도였지요. 그런데 고용변호사의 ‘방’과 개업변호사의 ‘방’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좀 더 자유롭지만,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기들에 비해 일찍 개업한 편이라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돈 많이 버느냐”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질문은 “편하냐”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변호사일 때 보다 많이 벌고, 편합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짧은 개업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개업변호사는 좋을 때는 아주 좋고 나쁠 때는 아주 나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개업변이 아닌 동기들은 부러워합니다. “변호사의 꽃은 개업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 엄살을 떤다고 타박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비교형량해보시면 진로를 선택하시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쁜 점 먼저 말씀드리지요.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점은 아무래도 수입이겠지요. 막 개업을 했을 당시, 선배 변호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패소한 변호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수입에 실패한 변호사는 용서할 수 없다.’ 맞습니다. 개업변호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사건 수입 능력입니다. 사건이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고 사무실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건이 없는 변호사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요즘 말로 ‘무쓸모’입니다. 개업변호사로 진로를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수입할 능력이 있는지부터 검토하세요.

자신의 인맥이 넓지 않다면, 부모님, 친인척 가운데 인맥이 넓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어도 개업하고 나면 의외로 사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각종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을 무작정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들 중에

‘해결사’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해결사’란 여기저기 오지 많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친구를 말합니다. ‘해결사’ 친구는 변호사에게 문제 있는 여러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사건을 수입하는 방법은 변호사 마다 제각각이고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몸소 부딪혀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질 일이 많은 것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입니다. 고용변호사나 사내변호사에 비하여 오롯이 자신만의 사건을 맡았을 때의 부담감은 정말이지 상상 이상입니다. 본인의 뒤에서 아무도 도와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기에 결과에 노심초사하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초연해지는 방법을 터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좋지 못한 결과를 의뢰인에게 전해줄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 밖에 직원 관리도 어려운 점입니다. 판사나 검사 혹은 로펌의 어썬 변호사로 치면 처음부터 부장 판·검사나 파트너가 되는 셈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여 직원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좋은 점은 아시다시피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봅니다. 물론 재판에 나가서는 판사님의 눈치를, 피의자 신문에 동석할 때는 수사기관의 동태를 살펴야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일 뿐입니다. 출근할 때 지각할까봐 마음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점심을 2시간 동안 먹어도 됩니다. 일찍 퇴근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일찍 퇴근해서 운동도 할 수 있지요. 물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긴 합니다.

벌이도 좋을 때는 좋습니다. 비록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을 잘 한다면 고용변보다 많이 벌기도 합니다. 수입이 잘된 달의 25일은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의 반찬이 달라집니다.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이 늘어 미뤄 놓았던 인터넷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통보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의뢰인과의 눈치싸움이 시작되지만, 그래도 ‘내 고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 날 하루는 종일 행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개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의 문제지만 언젠가는 경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관 개업은 아니지만, 젊고 열정적일 때 일찍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방은 기쁨과 슬픔, 환희와 분노가 교차합니다.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선택한 변호사란 직업이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만의 방’을 가진 개업변호사라서 만족합니다. ^창

66
결론적으로 저는 개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의 문제지만 언젠가는 경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관 개업은 아니지만, 젊고 열정적일 때 일찍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⁹⁹

나영주 변호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와 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학부시절에는 ‘사건’을 좋아해서 기사를 꿈꾸었습니다. 모 신문사 최종 면접에서 자격증 있냐는 사장의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자격증 중에 하나인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에 개입하여 해결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개업하여 법률사무소 신세계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지자체, 경찰청 등 자문변호사도 맡고 있고, 대한변협신문 등 각종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모름을 인정하는 용기

법률사무소 정립
조혜연 변호사

누구에게나 처음은 항상 소중하고 쉽게 잊혀 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롯이 혼자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던 그날 역시 저에게는 그런 날입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질문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체 무슨 질문을 할까?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나는 어찌야 하지? 답변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답이 틀리면 어찌지? 라는 두려움으로 바짝 긴장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증세는 한동안 계속되었고, 어쩌다가 기본정보를 조금이라도 주고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담 이전에 그 주제와 관련한 예상 질문들을 빛의 속도로 검색하여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난 이후에야 상담을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여행은 아무런 준비 없이도 홀연히 떠나버리는 성격이지만, 이상하게 변호사업무에서만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함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랬던 때로부터 벌써 2번의 봄이 지나 3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친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이며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예전만큼 준비를 많이 하지 않고 상담에 임해도 두렵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물론 아는 한에서는 최선의 답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예전과 변함이 없지만 말입니다.

예전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고도 의뢰인을 대하는 것

에 대해 누군가는 초심을 잃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파고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에 대한 답을 30초 안에 명확하게 내려주길 기대한다면 사람변호사가 아닌 알파고에게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가지 인생사를 다 알 수는 없으며 그에 대한 해답을 곧바로 내려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해서 부끄러워야 할 일이라거나 패배의식을 느낄 일이 아니라는 것을 2번의 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연구해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정확한 데이터와 판례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고마워하고 만족도가 높았던 편입니다.

또한 여기에 하나 첨언을 하자면 '모름을 인정하는 용기'에는 반드시 자신감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능해서 모르는가보다가 아니라, "아, 조 변호사님도 모르면 사건이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사건인가보다. 조 변호사님이 모른다고 하면 다른 변호사님은 아마 더 모를거야"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실력과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사안이라서 변호사라면 당연히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될 질문에 대해서까지 "아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적인 실력이 저변에 깔려있어야만 모른다고 이야기해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상대방 입장에서 신뢰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태자면, 자신감 있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할 때, "아 이거 제가 한번 연구해볼게요. 바로 답을 원하면 다른 사무실가서 상담 더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것을 다른 변호사들이 알리는 거죠"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뉘지. 이 변호사의 근거없는 자신감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의 기대감이 작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둑에서 바둑돌이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의 170승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모두 프로세스화해서 알파고는 이세돌 9단으로부터 승리를 거머쥐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만사 일의 해결책을 알파고에게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말해주면 30초안에 짜잔하고 정답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 우리는 모두 알파고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다하여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데에 조금의 용기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스스로를 조금 더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때 나름의 재간을 부려보고, 연기로도 커버가 되지 않을 때는 쿨하게 모름을 인정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의뢰인들이 상담을 할 때보면, 스스로가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했던 말을 한 10번쯤은 반복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투로 주어와 목적어는 모두 생략한 채, 횡설수설하기 일쑤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알파고라 하더라도 질문을 받다가 버그가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이 글과 큰 상관은 없지만 여담으로 붙여봅니다.) **창**

66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데에 조금의 용기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스스로를 조금 더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99

조혜연 변호사

2009년 생명과학과 4학년을 다니고 있던 어느 한 학생은, 주변에서 모두들 'MEET'를 준비할 때, 홀로 'LEET'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주변에서 모두들 고용 변호사로 들어갈 때 연구도 없는 지방소도시에 개업을 하는 모험을 하였습니다.

'법을 가지고 놀 줄 아는 변호사, 법으로 밥먹고 사는 변호사, 그렇지만 법을 통해 밥 못먹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꿈꾸는 변호사'를 모토로 나름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취업 에피소드 세 가지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기미진 변호사

공부는 알아서 교과서 중심으로 교수님 말씀 잘 따라서 하면 된다. 나는 솔직히 감도 잃었고 1,2,3학년 통틀어 공통된 관심사는 변호사시험 합격과 취업입에 분명하다. 재판연구원, 검사사가 되는 틈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소수의 선택받은 혹은 선택한 학생들만 가는 길이니 나는 보다 대중적인(?) 변호사의 길로 접어든 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한다. 부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뺄 건 빼서 로스쿨 3년 기간 중 이 글을 읽는 금쪽같은 몇 분이 여러분의 진로선택에 또는 그 준비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공단에서의 첫 경험

올해 벌써 8기가 입학했다니 세월 참 빠르다. 2012년 봄,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나는 로스쿨 1기로 입학할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1기 합격자로서 또 다시 도전과 방황의 중심에 서 있었다. 로스쿨 입학 당시, 어느 지방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법조인이려면 응당 인권 수호와 사회봉사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초심자의 의지를 피력했던 나는 당연히 국선 변호사가 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모든 게 처음이었던 우리처럼 로펌이나 국가기관에서도 준비할 겨를도 없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연수를 맡게 되었고 나와 함께 공단에 들어온 변호사들은 무급의 6개월 연수를 하게 됐다(2기부터는 실비지급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공단에서의 경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극히 인간적이고 보람된 일들이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부랑자나 고아들이 성본과 주민등록이 없어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해 공단에서 수행하는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공단은 이동법률상담차량을 운행하여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산골 오지까지 쟁기는 한편 각국의 법률구조제도를 비교·분석하는 법률구조 사례연구와 학문적인 심포지움에도 열심인 기관이었다. 단순히 법률상담과 소송만이 업무의 전부일거라 생각했던 나에게 공단은 새로운 시각의 법무업무, 변호사로서의 존재의의를 알게 해준 곳이다. 내가 있던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지금은 김천으로 이전)는 서울중앙지부와 한 건물을 사용했는데 아침 출근길이면 항상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끌어안고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문전성시를 이룬 인파를 보곤 했다. 지방순회 근무에 거부감이 없고, 안정적이면서 변호사로서 보람찬 업무를 해보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추천한다.

국제중재로 꽃 핀 고난의 길

나의 두 번째 인연은 바로 국제중재이다. 로스쿨 재학 시절 국내 모 법무법인에서 주최한 국제중재대회에 출전한 것을 계기로 3학년 때는 대형 법무법인의 국제중재팀에서 실무수습까지 마쳤지만, 원어민 수준으로 변론을 하고 서면을 작성해 내는 능력자들(?) 사이에서 이 길은 나에게 아직은 머나먼 꿈이라고 치부하고 있던 나였다. 애정과 관심은 있었으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국제중재분야의 중심에서 내 뉘를 해내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났다. 바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로서 동북아 최초의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는 TF팀에 소속되어, 상근변호사로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었다. 정말 매력적인 자리였고 100대 1의 경쟁률을 제치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떨 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나의 운명은 소위 '개척자'의 그것이었다.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시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이 거대한 꿈을 이루는


데는 그만한 고통과 인내가 따랐다. 국제중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곁에서 지켜보게 되기까지 모든 관련기관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각 종 서류작성을 비롯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개척해야 했고 센터 임대차부터 인테리어 및 물품구매까지 챙겨야 될 살림살이만 수백 가지가 넘었다. 많이 아팠고 또 많이 울었다. 하지만 대한변협과 중재센터의 일을 병행하면서 배우고 익힌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진한 양분이 되었음을 알고 있다. 앞으로 국제중재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후배님들은 기초적인 법지식과 더불어 외국어 능력을 갈고 닦으시기 바란다. 그 외에 전문분야 하나를 깊게 파다 보면 5년, 10년 후쯤 어느새 중재인으로 또는 중재분야에 몸담은 전문 변호사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님을 아시고 눈 크게 뜨고 지름길, 샛길 하다못해 우회로라도 찾으시길 바란다.


안정과 발전 사이에 있는 사내 변호사

나의 현재는 외국계 기업 사내 변호사이다. 항상 나의 운명이 그러했듯이 대기업 법무팀의 일원이 되어 내 할 일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던 나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유일한 한국 변호사가 되어 부담감과 책임감을 안고 업무를 시작했다. 외국계 기업이란 말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지사의 타임존과 함께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난 생처음 외국친구와 펜팔이 아닌 업무상 컨퍼런스콜을 하게 되었고 영문 이메일을 매일같이 주고받게 되었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인사·물류·기술·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계약서 검토와 법률자문을 맡게 되었으니 요새같이 힘들 때 배부른 자의 투정(?)이라 할지라도 내 나름의 고충이 있음을 토로하고 싶다. 솔직히 배우는 것도 많고 인정받을 때는 뿌듯하기도 하다. 소속감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송무 업무와 소위 필드(?)에서 직접 뛰면서 살아있는 법 지식을 익히고 싶다면 사내 변호사는 조금 천천히 진입해도 무방한 직역이라 말해주고 싶다.

어쩌다보니 내가 거쳐 온 길들이 모두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들이다. 로스쿨 준비할 때와 입학할 때의 설렘 그리고 두려움. 3년 동안 지치고 피폐하지만 목표가 있었기에 함께할

수 있었던 교수님 그리고 동기들. 알게 모르게 내가 사회에서 제 뉘를 해내는데 몰심양면으로 도움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라다. 그렇지만 사람은 간사한 동물이고 나는 쉽게 싫증내는 여자동물 중 하나이다.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한 변호사님이 지방변호사회보에 남긴 말씀에 공감한다. 변호사를 커리어의 끝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맞는 말씀이다. 비록 당장은 눈앞에 시험, 취업 밖에 안 보이겠지만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변호사가 자기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파이팅! 

66
비록 당장은 눈앞에 시험,
취업 밖에 안 보이겠지만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변호사가 자기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미진 변호사

아직 방향중인 청년 변호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한항공 승무원을 거쳐 충북대 로스쿨에 진학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국제중재센터, 사내 변호사까지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싱글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아 짝을 찾고 있지만 좀처럼 높아진 눈이 낮아질 줄 모른다고 주변에서 말한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자유를 꿈꾼다.



사진제공: 충북대학교 법전원

충북대 법전원, 재학생 대상 '법학연구소 초청강연회' 개최

3월 8일(화) 충북대학교 법전원에서는 재학생 및 법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6 법학연구소 초청강연회'가 개최됐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FTA 활용지원 체제를 구축했던 관세청의 이명구 통관지원국장이 '수출입 통관과 FTA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이번 강연은 법률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국제무역관계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측에서 마련한 것이며, 법전원생을 비롯해 일반 학부생들도 다수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고려대 법전원, 미얀마 주민 대리해 국내 기업에 소송

고려대 법전원 산하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법무법인 이공과 함께 미얀마 차유류 지역주민 20명을 대리해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를 상대로 주민 1인당 1천만원씩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포스코대우가 2009년 이 지역에 육상가스터미널을 지으면서 토지 사용권을 가진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이유다. 당시 미얀마는 군부 독재체제가 공고했던 시기로, 토지 소유권은 정부에 있고 상속·양도할 수 있는 사용권만 주민들이 갖고 있었다. 퇴역군인 등이 주축인 지역 통치기구 '마을평화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주민들에게 사용권을 넘기는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이 소송 제기 배경이다. 학생들은 미얀마 방문이 자유롭지 않았던 2010년부터 태국의 미얀마 접경지에 가서 조사했고, 항공 노선이 생긴 2011년부터는 직접 미얀마를 찾아가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소송 대리 위임장을 받아오는 등 소송을 준비해왔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맡지만 모든 실무 준비는 법전원 학생들과 교수들이 맡았다.



사진제공: 연세대학교 법전원

국제모의재판대회서 하버드 꺾고 8강 진출한 연세대 법전원팀

지난 3월 7일(월)부터 13일(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제13회 비스이스트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Willem C. Vis Eas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에서 연세대 법전원팀(7기 김한울, 김태엽, 이준은, 이진규, 정승은)이 8강에 진출했다. 비스무트 대회는 국제 사법 분야 최고의 모의재판대회로, 올해는 총 31개국에서 115개 팀을 비롯해 약 1000여 명의 학생, 중재인 등이 참여해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무엇보다 연세대학교 법전원팀의 쾌거가 역대 한국팀이 거둔 최고의 성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진제공: 충남대학교 법전원

충남대 법전원, '캠퍼스 열린 법정' 열어

대전지방법원과 충남대 법전원이 함께 주최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이 지난 3월 24일(목) 개최됐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법전원 재학생 및 학부 재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재판을 접하고 법원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다. 이날 캠퍼스 열린법정에는 법전원 재학생들 비롯해 일반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관했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병식)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재판의 실제 진행과정인 원고와 피고의 구술변론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상대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법전원 학생들로 구성된 '그림자 재판부'의 의견을 청취 및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 전남대학교 법전원

전남대 법전원, 미국 알란 보저 변호사 초청 특강

3월 17일(목) 미국 Phillips Lytle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 Alan J. Bozer가 전남대 법전원생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제와 인신보호영장제도'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180년 전통을 이어온 미국 필립스 라이틀(Phillips Lytle)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알란 보저는 이날 인신보호영장제도(the Writ of Habeas Corpus)의 배경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재학생 130여명과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강은 성황리에 마무리 됐으며, 전남대 법전원은 향후에도 특강을 개최해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제5회 변호사시험 1천581명 합격

4월 21일(목) 법무부는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81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2,864명이 응시했으며, 합격률은 법전원 입학 정원(2천명) 대비 79.05%, 응시자 대비 55.2%이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제4회 시험(61.1%)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합격자 성별로는 남자 939명(59.39%), 여자 642명(40.61%)이며,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 926명(58.57%), 법학 비전공 655명(41.43%)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내년에 치러질 6회 변호사시험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 합격률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료일원화를 꿈꾸며 로스쿨에 다닙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한의사, MPH, (주)함소아제약 대표이사 **최혁용**



66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일원화가, 즉 양한방이 함께하는 제도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상의 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사가 아니라 학교로 출근합니다. 99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제 나이는 45살이었습니다. 이미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한의사로, 사업가로 자리도 잡은 뒤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오직 한가지입니다. 한의대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져온 꿈, 대한민국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통합해 일원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한의사와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무후무한 제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의 나라에는 한의사가 없습니다. 중국은 중의사, 우리로 치면 한의사와 양의사가 모든 치료법과 의약품을 함께 씁니다.

중의사 면허를 따도 양의사가 처방하는 모든 약과 의료기기를 쓸 수 있고, 양의사도 모든 한약과 침을 쓸 수 있습니다. 천연물이든 화학성분이든, 주사제든 먹는 약이든,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어떤 경계나 구분 없이 중의사와 양의사가 함께 쓰며 환자를 치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킵니다. 사회 기반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았던 1960년대에 중국에서 신약이 개발되고, 그 약으로 노벨의학상까지 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면허가 나뉘어져 있고, 면허에 따른 의료 행위 범위도 애매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방할 수 있는 약, 쓸 수 있는 의료기기가 다릅니다.

이렇다보니 의사와 한의사 모두 자신들이 처방할 수 있는 약과 의료기기 범위를 넓히기 위해, 독점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의사들은 엑스레이와 초음파, 레이저를 쓰기 위해, 양의사들은 침을 쓰기 위해 일어나는 법적 소송도 비밀비재합니다.

심지어 한의사들이 쓰는 한약 재료인 천연물로 신약이 만들어지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정작 한의사들은 쓰기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필요하다면 침을 놓기도 하고, 한의사가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면 여러 진단기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을 늘 상상합니다. 필수 의약품은 한약과 양약의 구분 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환자들도 의원과 한의원의 구분없이, 한곳에서 두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환자를 위해 필요하면 누구든 쓰는 것이지, 쓰기 위해 혹은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과 양방으로 나뉘어져있는 지금의 의료체계를 합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목표를 향한 제 열망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의학 박사까지 마치고 나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도,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매일 밤낮없이 공부하는 것도 모두 그 실천의 일환입니다.

이런 자기개발과 함께 한의계 내부에서도 많은 일을 가장 처음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이었던 만큼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1999년에 '소아 전문' 함소아한의원을 개원했고, 2001년부터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네트워크 의료기관 등장에 한의사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는 치료 도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GMP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짓고 '함소아제약'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홍삼 같은 건강식품도 생산한다는 이유로 한 의사 사회 내부에서 역적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아과 의사 단체로부터 "한의사 주제에 청진기를 사용한다"고 고발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함소아'라는 이름이 마치 양방 소아과처럼 들린다는 이유로, 한의원에서 코와 귀를 들여다보는 내시경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고발 당하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아토피 화장품에 양약성분이 들어가 있다며 의사협회장이 직접 나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법정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모두 독점을 바라는 전문가 주의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이해했고,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이 있을지라도 세상을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해 덮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법적인 여러 문제에 봉착했다 해결되는 과정들이 모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득이 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부분은 제가 의도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잠재해 있었던 많은 문제들은, 누군가 나서 풀지 않는다면 영원히 문제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의료일원화에 제가 배운 법학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아직은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정의가 모호하여 업종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에서 상행위를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구분하는 것을 보면, 의료행위의 정의도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정책과 제도는 법을 통해 구현됩니다. 제가 법을 배운다는 것이 결국에는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에서 한의학이 차지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학과 한의사제도가 잘 활용되는 일원화를 꿈꿉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일원화가, 즉 양한방이 함께하는 제도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상의 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사가 아니라 학교로 출근합니다. ㅎ

입학 후 1년을 되돌아 보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조주상



66

감사한 마음을 가질수록 주변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보니 많은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99

I. 서론

저는 작년에 법률전문가의 꿈을 안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고 벌써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여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1년간 생활하면서 설정한 세가지 방향성에 대해 나눌까 합니다.

II. 감사할 수 밖에 없는 로스쿨 생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몸 담고 있는 학생들의 숙명이기 때문에, 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박한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의지가 되고 믿음이 가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이 학기 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제게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어서 법학전문대학원 생활 1년을 잘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며, 제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의 일원으로서 감사한 분들을 위해 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III. 제11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임기를 마치며

저는 작년 9월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으로 선출이 되어 올해 3월 31일을 끝으로 학생회장의 임기를 마쳤으며, 학생회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직후에 입학하신 분들부터 각종 사회경험을 하고 입학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모여계시는 법학전문대학원은 통상적으로 대입수능을 보고 고등학교 졸업 직후 입학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대학교 학부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각자의 이해가 많이 다를 수 있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보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법조인의 자질 중의 하나인 중재와 조정의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장을 하면서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유예 방침 발표에 대응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연합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일 간의 투쟁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사법개혁 원안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부 결속을 강

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민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한 해명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한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을 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들이 견지해야 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국회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국회 입법이사법시험 폐지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화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투쟁을 통해서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목적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디서 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IV.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 견지해야 될 태도

1.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생활하자

저는 법률전문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덕목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고 사법시험 2차를 응시한 경험이 있지만 법이라는 학문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새롭고 더 깊이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분야라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생각은 법학전문대학원 1년 동안 더 법학을 공부해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뛰어난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모든 분들에게서 배울 점과 본 받을 점이 있다는 생각 아래 항상 배운다는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러한 태도는 졸업 후 실무에 나가서도 변함없이 유지할 생각입니다.

2. 스스로 한계를 결정짓지 말자

변호사시험 과목들은 그 양이 방대하고 또 어려워서 간혹 좌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수 많은 진로가 있고, 그 중 원하는 진로가 있음에도 자기 자신을 한계지어서 '난 안 될거야' 라는 생각으로 원하는 진로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이 목표

하는 바가 있다면 최선을 다 해 보고 달성을 하지 못 하게 된다면 그것이 한계인 것이지 미리부터 포기할 바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1년의 재학기간 중 제가 원하는 진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2년은 그 뜻한 바대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법학전문대학원 1년의 생활을 돌이켜볼 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늦은 나이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다시 법조인의 꿈을 꾸게 된 것,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 힐링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학생회장의 직분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점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과분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수록 주변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보니 많은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 변치 않고 남은 법학전문대학원 생활, 더 나아가 실무에 나가서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허히 살아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V. 글을 마치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을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2년 후면 실무에 나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실무에 나가기 위한 역량을 얼마나 키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부족한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글을 통해 저를 알게 되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졸업하신 분들과 마주칠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커피 한잔 하면서 글로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늘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창

‘로스쿨 출신 변호사 2인’



성균관대 로스쿨 4기 강성민 변호사

전남대 로스쿨 1기 조성원 변호사

한국에서 법조인이 될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종사를 희망하는 이들 사이에 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정원은 총 2000명이다. 전국 25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로스쿨 입학자격은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다. 법령에 의해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로스쿨 지원자는 9404명으로 경쟁률은 4.7대 1이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선 학점, 공인영어성적, 서류 및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통과해야 하고, 법학적성시험(LEET)과 면접 등을 거쳐야 한다. LEET는 매년 8월 말 치른다.

3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치면 마지막 관문인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은 매년 1월 초 나흘간 치러진다. 시험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분야 등 8개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81명을 발표했다. 올해 응시자(2864명) 대비 합격률은 55.2%로 전년(61.11%)보다 낮아졌다.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조성원 변호사(41·1회 합격)와 강성민 변호사(31·4회 합격)를 만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삶과 꿈을 들어봤다.



강성민 변호사

▶ 1985년생→부산대(언어정보학과)→성균관대 4기 법학전문대학원→4회 변호사시험 합격(2015년)→법무법인 청조 변호사

▶ 장학금 받은 내역 : 1학년 2학기 경제환경장학금(30%), 2학년 1학기 경제환경장학금(40%), 2학년 2학기 경제환경장학금(40%), 3학년 1학기 성적장학금(50%), 3학년 2학기 성적장학금(100%)

변호사시험 공부법 무료 전수... 지금은 12개 로스쿨서 강의

성균관대 로스쿨 4기 강성민 변호사

97등 입학→6등 졸업

‘나만의 공부법’ 정리한 변시 수험서 입소문

“사람을 살리고, 소외받는 이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자.”
2014년 12월25일, 로스쿨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던 강성민 씨(32)는 성균관대 로스쿨 동기(4기)들과 함께 이렇게 다짐했다. 그렇게 뜻을 세운 강씨는 지난해 말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그의 1학기 성적은 120명 중 97등. 3학년 2학기 땀 6등으로 올라섰다. 그는 “지방대(부산대 언어정보학과) 출신이 서울 명문대를 나온 이들과 경쟁해 상위권으로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강 변호사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엔 그만의 공부법이 있었다.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매일 아침 기상 후, 저녁 잠들기 전 각각 30분씩 그날 공부한 걸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희미하게 알던 지식을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공부법과 노트를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로스쿨을 다닐 때 그가 정리한 노트는 『상법 엑기스1, 2』, 『민사기록 엑기스』, 『공법 기록 엑기스』란 이름으로 작년에 출간됐다. 네 권의 변호사시험 대비서는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 벌써 입소문이 났다. 법무법인 청조에서 근무 중인 강 변호사에게 성균관대,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12개 로스쿨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 1년 만에 ‘스타 변호사’이자 ‘스타 강사’가 된 것이다.

변호사가 된 뒤에도 주말을 이용해 여러 곳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4회 변호사 시험에 탈락한 동료를 위한 강의다. 지난해 5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 6시간씩 로스쿨 동기들을 위해 무료 강의를 하고 있다. 4명이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16명까지 늘었다. 강 변호사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그 빛을 갚고 싶었다”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부산 출신으로 목사 아버지를 둔 강 변호사는 집안이 넉넉지 못했다. 서울에서 로스쿨 생활을 꿈꿀 수 없는 형편이었다. 성균관대 로스쿨과 부산대 로스쿨 두 곳에 합격했지만 고민이 컸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빚만 1억원이 되겠구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는 경제적으로 고민하는 로스쿨 준비생들에게 “로스쿨에는 경제환경 장학금이 있으니 미리 돈 걱정부터 할 필요 없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도 로스쿨을 다니면서 세 차례 경제환경 장학금을 받았다.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쏟아지는 시대. 강 변호사는 “돈을 좇기보다 실력을 키우고, 특권의식은 버리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실력이 없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받는 건 불행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변호사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의뢰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부도가 터닝 포인트... 신용불량자가 변호사 됐죠

전남대 로스쿨 1기 조성원 변호사

돈 없어 司試 2차 포기

“로스쿨 장학금 덕에 흠수저인 나도 혜택”

‘변호사가 된 파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취재하기 위해 접촉한 조성원 변호사(41)로부터 이런 제목의 이메일과 이력서를 먼저 받았다. 관심을 확 불러일으키는 제목 때문에 그가 보내온 이력서를 끝까지 읽었다.

그가 변호사가 되기까지는 굴곡이 많았다. 원광대 법학대에 1993년 입학했지만, 졸업은 10년 후인 2002년에야 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을 다니면서 과외, 방문교사, 공사장 일용직 등 아르바이트를 닦치는 대로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내리막길만 있었던 건 아니다. 결혼 후 사업을 하는 장인의 도움으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장님 소리도 들어봤다.

하지만 학원 개설 후 3년 만에 장인의 사업이 망하면서 보증을 선 조 변호사도 신용불량자가 됐다.

밑바닥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응시한 사법고시 1차에 합격했지만, 2차시험 준비를 위해 시작한 서울 신림동 고시촌 생활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 달여 만에 접어야 했다.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려던 무렵 로스쿨제도가 생겼다.

전남대와 전북대 로스쿨 생활수급자 특별전형에 지원한 그는 두 곳 모두 합격해 3년간 전액 장학금 제의를 받았다. 그는 전남대 로스쿨을 선택했다. 조 변호사는 “로스쿨은 등록금이 비싸 ‘금수저’만 가는 줄 알았는데 ‘흠수저’인 사람에게도 법조인의 꿈을 실현시켜 줬다”고 말했다.

로스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특별전형이 있다. 일정 조건(학점)을 유지하면 로스쿨 재학 3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조 변호사는 로스쿨 1기 출신으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법조인의 꿈을 안고 법대에 입학한 지 20년 만이었다. 조 변호사는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운영했다. 작년에는 군산에 있는 법무법인 청운의 대표변호사가 됐다.

조 변호사는 로스쿨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처럼 변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워했다. “로스쿨의 다양한 법률 수업과 특성화 수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시험에서 전공과목 숫자를 줄이고, 선택과목을 늘리는 게 법조계의 다양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는 “매년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응시 인원이 아니라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로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걸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객관적으로 실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지만, 합격 인원을 기계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 변호사에게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묻자 울초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들려줬다. “어머니께선 항상 ‘바르게 돈 벌어라’고 하셨어요. 매 순간 바르게 돈을 벌며 이 사회가 변호사에게 갖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살겠습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기사출처: 한국경제 2016. 04. 25



조성원 변호사

▶ 1975년생→원광대 법학과→전남대 1기 로스쿨→1회 변호사시험 합격→조성원 법률사무소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규제 댄 설립 취지 흔들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

“로스쿨은 각자 다양한 기준을 갖고 학생을 뽑은 뒤 5~10년 이후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평가받습니다. 교육부가 일부 로스쿨 문제를 두고 전체로 확대해 입학 전형에 간섭하면 오히려 로스쿨 설립 취지만 흔들릴 뿐이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표하는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사진)은 26일 기자와 만나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강한 불만을 내보였다.

지난 3월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쓴 책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 부정입학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일부 학생이 법조인 부모 직업을 자기소개서에 적어 로스쿨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었다. 이후 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을 전수조사하고 나서자 논란은 로스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퍼졌다.

오 이사장은 “단순히 부모의 직업을 자기소개서에 적었다는 사실 자체로 불공정한 입학 사례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부모 직업 기재는 그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보기 위한 항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 이사장은 로스쿨 문제를 사법시험 존치 문제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도 경계했다. 그는 “비리가 적발되면 엄히 책임을 묻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대다수 로스쿨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며 “사시 존치로 논의를 확대하려는 역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6

로스쿨은 각자 다양한 기준을 갖고 학생을 뽑은 뒤 5~10년 이후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평가받습니다.

교육부가 일부 로스쿨 문제를 두고 전체로 확대해 입학 전형에 간섭하면 오히려 로스쿨 설립 취지만 흔들릴 뿐이죠. 99

교육부는 이번주 안으로 25개 로스쿨의 입학 비리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부정 입학 사례가 드러나면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 과정에 개입해 정량(영어·학점·LEET)평가를 강화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정성(자기소개서·면접)평가 비중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25개 로스쿨은 각자 다른 기준으로 학생을 뽑았다.

오 이사장은 교육부의 개입 움직임을 두고 “숫자로만 공정한 ‘표면적 공정성’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국은 ‘시험 고수들’의 나라여서 정량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모든 준비생이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에 딱 맞춰 시험을 준비할 것”이라며 “결국 사법시험처럼 다양성이 없는 균질한 학생을 뽑게 돼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량평가를 강화하면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정성평가를 강화하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로스쿨과 교육부가 맞닥뜨린 딜레마다. 오 이사장은 ‘시장’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그는 “25개 로스쿨이 각자 기준을 갖고 학생을 뽑으면 그 결과는 5~10년 뒤 법조 시장에서 알 수 있다”며 “로스쿨끼리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정부가 개입해 기준을 정해주면 결국 ‘25개 국민 로스쿨’을 만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사출처 : 한국경제 2016. 04. 27

변호사 2만 명 시대. 해마다 변호사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시·군 158곳 중 절반가량이 '무변촌(無辯村)'일 만큼 법률서비스 사각 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생했다. editor. 박소희

오지 마을의 주민들도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하게 한 마을 변호사 제도!

1. 마을변호사 제도는 왜 만들어졌나?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과 변호사를 연결하여 전화·인터넷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취약한 변호사 접근성

17,474명의 개업 변호사 중 82.34%(14,389명)가 수도권에, 88.52%(15,468명)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다. 변호사 현황표에서 볼 수 있듯 수도권 및 광역시에 변호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외의 지역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변호사 현황]

지역	서울	경기 북부	인천	경기 중앙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소계
개업 변호사	12,784	319	478	808	139	160	435	539	655	170	277	407	228	75	17,474

2016년 1월 31일 기준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문제 발생 시 누구에게?

국민들은 크고 작은 법률문제가 생길 때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변호사에게 찾아가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끼는 상황이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장려·활성화 필요

변호사법 제27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합계 20~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의 의무가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변호사는 재능기부가 가능하며, 공익활동의 의무까지도 지킬 수 있다.

2.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 절차

상담자가 읍·면사무소에 문의할 시, 마을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안내해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전화만으로 상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법률상담 카드를 작성해 마을변호사에게 팩스로 전송해 상담을 진행한다. 보다 심도 있는 법률 상담을 위해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담자와 방문 일자 등을 협의해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뒤에는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구조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



전화, 인터넷, 팩스

마을에 상주하지 않지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법률문제 상담, 필요한 법적절차 안내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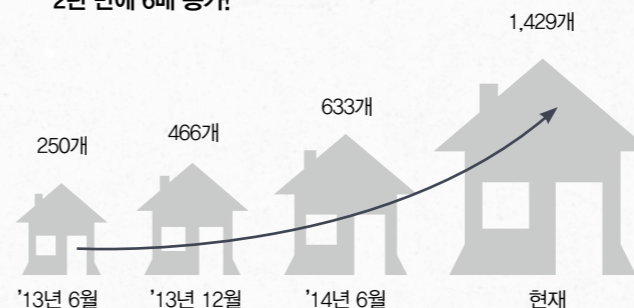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한 법률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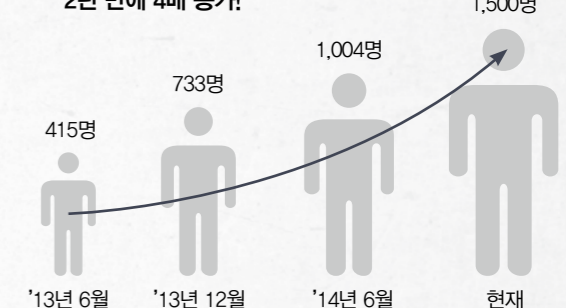
3. 마을 변호사 도입, 그 후?

마을변호사가 도입된 2013년 6월, 마을변호사 배정 마을은 25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마을은 1,429개로 약 6배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순전히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415명이던 마을변호사는 1,500명에 이르렀다.

마을변호사 배정 마을 2년 만에 6배 증가!



마을변호사 위촉 2년 만에 4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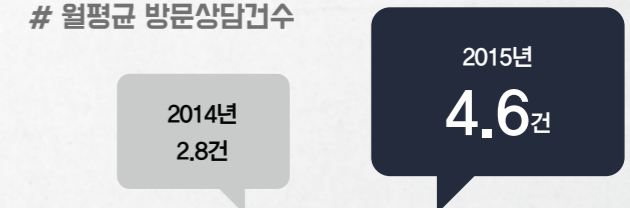
상담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변협에서 실시한 마을변호사 상대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중 상담을 시행한 후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78%에 이른다. 이에 대한변협은 마을변호사가 마을 주민들과 실제 상담한 건수는 약 3,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법률상담카드	213건	277건	206건	696건
방문상담	19건	34건	21건	74건
합계	232건	311건	227건	770건

월평균 상담건수



월평균 방문상담건수



4. 마을변호사가 해결한 사건들

전북 : 손해배상

억울하게 다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 농사를 짓는 A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J 지자체가 관리하는 제방의 계단을 건너가던 중 중간에 발생한 구멍에 빠져 왼쪽 다리가 부러져 14주의 진단을 받았음.
- 그러나 J 지자체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룰 뿐 어떤 손해도 배상하지 않고 있어, A는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 마을변호사는 J 지자체가 제방 계단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사건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내 신속하게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함.

경남 : 혼인문제

불법체류자라는 제 아내, 어떻게 하죠?

- C는 결혼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에 직접 찾아가 베트남 여성 T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비자 등의 문제가 있어 C가 먼저 귀국하고 T는 2~3개월 후에 입국하기로 하였음.
- 알고 보니 T는 과거 한국에 불법체류 전력이 있어 국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재까지도 T는 베트남에 남아 있고, C와 T는 배우자 관계로 신고되어 있어, C는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함.
- 마을변호사는 현재까지도 법적으로는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혼인무효확인 소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절차를 소개함.

충북 : 토지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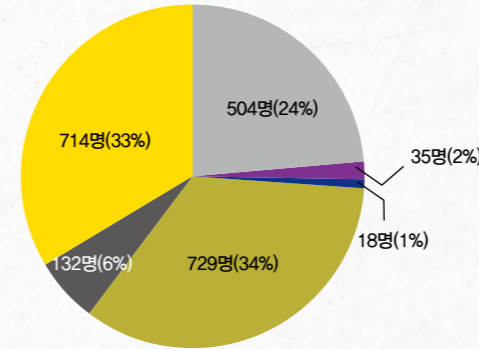
땅 사용료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요!

- F씨는 이웃 주민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고, 백미 160kg(2가마, 현시세 약 40만 원) 상당의 돈을 지료로 받기로 하였음.
- 그러나 이웃주민은 자기 마음대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돈을 다 주지 않고서 계속하여 땅을 사용하였고, 이에 F씨는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함.
- 마을변호사는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상권 소멸을 주장하면서 건물철거나 미지급 지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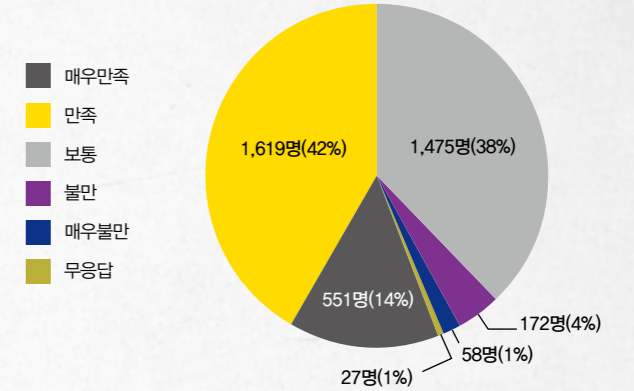
5. 국민 만족도는 어떻게 변했나?

지역에 변호사가 한명도 없어,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무변촌 주민들은 '마을변호사'제도의 도입으로 편리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상반기 마을변호사 제도에 '만족'한다는 주민은 전체의 24%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42%로 대폭 상승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도 6%였던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14%를 기록했다.

'14년 상반기 국민 만족도



'14년 하반기 국민 만족도



보통 법에 대해 얘기하면 엄청난 중압감이 느껴지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더 거부감이 들죠. 그런데 마을변호사님이 법에 대한 울렁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주 구좌읍 평대리 김양운 이장님)

애들 교육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시내로 나갔는데, 어쩔 때는 발일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 물어볼 사람이 생겨서 좋게 됐지. (제주 구좌읍 덕천리 한만금 할머니)



예전에 집안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몰라서 애를 먹었어요. 지금은 그 일이 마무리됐지만 당시에는 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마을변호사가 생겨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다행이에요. (제주 구좌읍 덕천리 박천길 할아버님)

여기서 잠깐! 우리 마을 변호사를 찾는 방법

- ① 읍·면 사무소에 가면 마을변호사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이 비치되어 있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02-2087-7852), 법무부 법무과(02-2110-3500)으로 연락하면 지역의 마을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③ 마을변호사 홍보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 통계 및 자료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및 마을변호사 홍보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Legal Clinic)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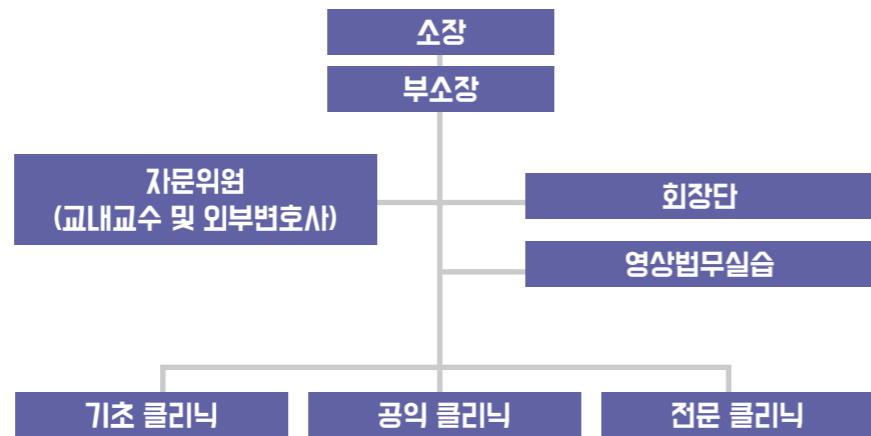
1. 리걸클리닉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관건이 됨.
-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기여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2) 리걸클리닉 조직 및 운영방법

- 리걸클리닉 센터 : 25개교 법전원 리걸클리닉 센터(또는 법률상담센터) 운영 중
- 전담조직



* 참고 : 조직체계는 학교마다 다름

- 법률상담위원, 자문위원 등은 다양한 전공의 교수와 외부 변호사를 자문위원·겸임교수로 하여 운영함
- 운영방법 : 리걸클리닉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리걸클리닉 운영규정'과 각 전문분야별 업무흐름도(가이드라인 등)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리걸클리닉 사업 내용

1) 리걸클리닉의 사회적 기여

[무료 법률상담]

-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 리걸클리닉 센터를 상시 운영, 학생이나 인근 주민이 필요시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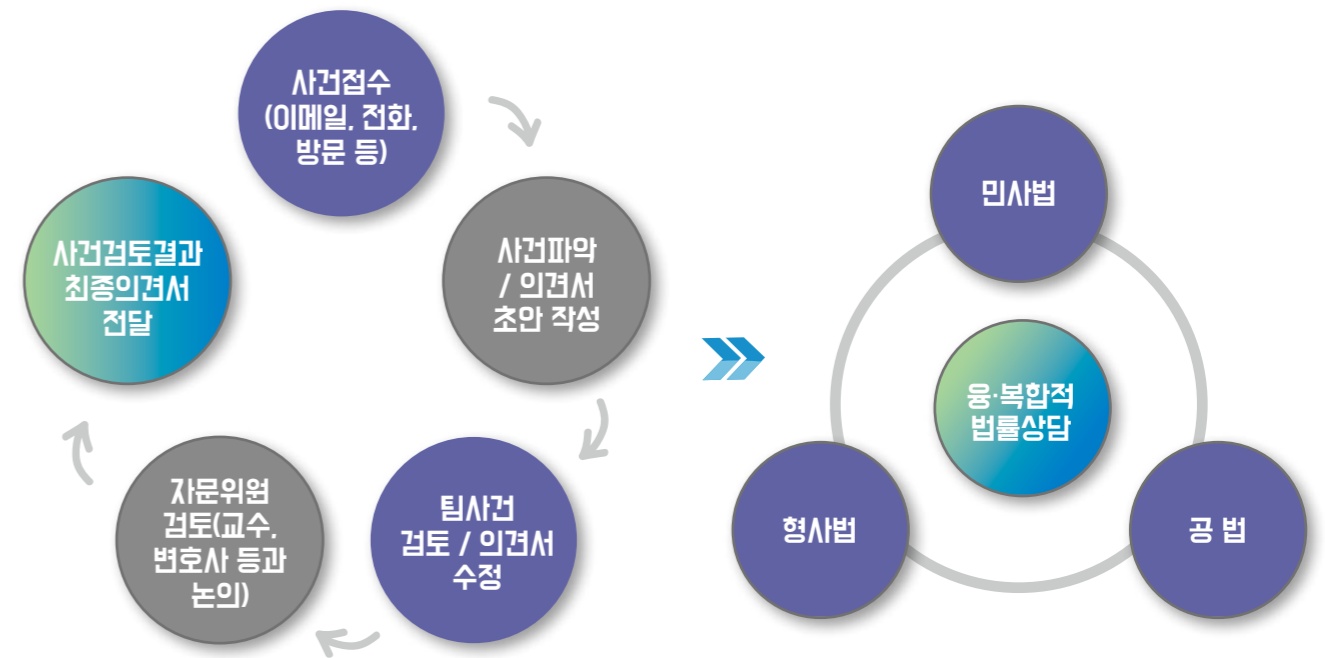
[무변론 법률상담]

- 전국각지의 무변론에 법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진행

[소송지원]

- 법률상담 결과 소송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자력으로 분쟁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집단피해사건으로 교육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교가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보조하여 분쟁 해결함

2) 상담절차





3. 리걸클리닉 정부지원 및 운영 성과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지원을 받아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실무교육역량강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역량강화 사업(리걸클리닉 사업)』을 수행하였음.

• 2012~2015년도 정부예산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지원금(천원)	1,000,000	1,000,000	875,000	763,000

•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국고지원을 통해 수행한 법률상담 및 소송참여 실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법률상담 7,715건과 소송참여 1,233건에 이룸.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법률상담(건)	1,284	2,147	2,204	2,080
소송참여(건)	235	240	424	334

• 4년에 걸친 지속적인 국고지원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 사업은 양적·질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변호사시험이 해를 거듭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실무교육역량강화 사업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음.

•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실무교육의 역량강화가 중요함.

• 따라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리걸클리닉 정부예산 지원이 계속되고 교과목을 졸업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4. 2015년도 법전원별 우수사례

법전원	우수사례	법전원	우수사례
강원대	"청소년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영남대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방문 법률 상담 실시
경북대	공익소송프로그램	원광대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상담소 개설
경희대	여성아동보호솔루션팀 (가족애발견지원단) 활동	이화여대	특성화 반영 리걸클리닉의 운영 (여성법률상담센터 개설)
고려대	• 클리닉 개설의 다양성 (14개 분야)과 충실성 • 국제인권클리닉 - 미안마 현지 방문	인하대	전문분야클리닉 (예술경영지원센터 연계)
동아대	• 공익법률지원사업의 학생참여소송 • 클리닉 이후의 점검 및 보완 절차의 충실성	전남대	찾아가는 법률지원서비스 (법률상담 봉사동아리 「서로」)
부산대	리걸클리닉 내실화와 법률봉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북대	리걸클리닉의 주요프로그램
서강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연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민사 완전체험 프로그램 실시)	제주대	• 졸업생과 연계한 법률취약지역 무료법률 상담(9건)
서울대	임상법학과목의 다양한 운영	중앙대	• 참법률지원단 (외부법인, 졸업생 연계) • 상담일지의 충실한 작성
서울시립대	변호사 연계 지역사회 법률구조 프로그램	충남대	의학전문대학원 연계 충남지역 법률상담·의료봉사 활동
성균관대	• 법원연계형 조정클리닉의 운영 • 무료상담 (상담 94건/소송수행 66건)	충북대	리걸클리닉 내 전문상담시설 (법률지원실) 운영
아주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국외대	• 전문분야 클리닉의 다양성 (난민, 탈북자, 소비자) • 탄력적 운영 - 학기 중과 방학 중 병행 진행
연세대	• 클리닉의 전문성 • 통합적 지식재산 실무교육 (강좌개설 및 학생참여) • 학생지도의 충실성(첨삭)	한양대	리걸클리닉 개설의 다양성·공익인권 클리닉의 충실성·학생의 참여도 확대

어머니라는 이름 _ 미켈란젤로, 피에타

오늘은 회화가 아닌 조각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만화영화 '닌자 거북이' 좋아하셨나요?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저는 만화로 르네상스 예술가들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좋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위대한지는 잘 모릅니다. '피에타'는 변호사로서 성공하기를 바란 집안의 기대를 뒤로 한 채 예술가의 길을 걸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고통스럽고 슬픈 성모자가 아닌, 성스럽고 평온하고 구원받은 성모자로 표현해서 위대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작품을 보죠. 우아한 신체와 곡선미는 돌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육체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유난히 젊게 표현하여 순결한 모습으로 마치 아기 예수를 낳은 그 때를 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30세의 장성한 아들의 주검입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 이작품의 핵심입니다.

피에타(이탈리아어: Pietà)는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을 뜻하는 말로 기독교 예술의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Pietà"는 'Pity'의 이탈리아어로, 예수의 죽음을 비탄하는(Lamentation) 뜻입니다.

lamentation이 나와서 말인데, 회화에는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꼭 기독교도가 아니더라도 중세, 르네상스 시기 예술을 즐기기 위해서는 기독교 주제를 알아야 하죠. 심지어 현대미술에도 이러한 주제들이 변주를 이루고 있지요. 기독교 주제는 대개 성모 마리아의 7가지 슬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그리고 십자가의 길 등 예수의 처형과 죽음을 나타내는 주제를 말합니다. 마리아를 주제로 한 것도,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몇 개의 주제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수태고지, 성모자, 피에타, 성모승천, 성모대관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피에타는 여기서 나온 것인데요. 당시 피에타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은 유럽 북부에서 유행했던 것인데, 14세기경 독일에서 처음 다루기 시작해 프랑스에서 대유행합니다. 그러나



▲ 피에타, 피에트로 페루지노, 1483~1493년



▲ 아비뇽의 피에타, 앙게랑 카르통, 15세기 중반



그림 출처

- 나무 위키피디아
- http://www.webegt.com/cgi-bin/egt/read.cgi?board=GPaintings&y_number=37
- http://www.standrewkimchicago.org/xe/?document_srl=111331&mid=MyStory&page=1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strama&logNo=110099842738&categoryNo=36&viewDate=¤tPage=1&listtype=0>
- http://www.nyculturebeat.com/index.php?document_srl=1809&mid=Art
- <http://eorhks8.egloos.com/141240>
- http://www.onlineif.com/ifNews/womanMythView.php?wr_id=18749

저자소개



김별다비

경감, 변호사, 큐레이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싯대박물관 큐레이터, 아르크 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엘지전자 개인정보 compliance task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로 3년여 근무하다 예술인의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뜻을 두고 2기 경감 특채로 선발됐다. 3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변론 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대안공간 정다방, 리각 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월간 BizArt지와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미술법 칼럼을 쓰고 있다.

이 조각상이 제작될 때는 아직까지는 이탈리아에는 전파되기 전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생전에 만든 거대한 조각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완성을 끝마친 작품이기도 합니다. 2년이 채 못되는 기간에, 한 개의 대리석 덩어리, 최신 유행양식으로 말이지요.

미켈란젤로가 22살 때 로마에 체류 중이었던 프랑스 추기경 장 드 빌레르의 의뢰로 “피에타” 제작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작가 자신이 알프스에서 적합한 대리석을 찾아내어 1499년(그의 나이 29세)에 이 조각을 완성하였습니다. 장 드 빌레르 추기경의 장례 미사 기념비로 제작되었지만, 18세기에 지금의 성 베드로 대성전 입구 오른쪽에 있는 경당으로 위치가 옮겨졌습니다.

특히나 이 피에타가 유명한 이유는 미켈란젤로가 남긴 수많은 조각들 중에서 그의 서명이 남아 있는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으로, 성모 마리아의 어깨띠에 “MICHAEL · ANGELVS · BONAROTVS · FLORENT · FACIEBAT(피렌체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었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조르조 바사리의 <예술가 열전>에 의하면 피에타가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롬바르디아 출신의 2류 조각가가 만들었다고 하자 미켈란젤로는 그 말에 화가 나 밤중에 몰래 성당으로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새겼지만, 뒷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서 이후에 자신이 만든 작품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표현은 마리아의 얼굴이 매우 옛되게 표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그밖에도 예수의 몸에 비해 마리아의 신체 비율이 매우 거대하게 표현된 점, 그리고 사망한 후 사후 강직이 일어났어야 하는 예수의 몸이 부드럽게 늘어져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의 얼굴은 예수보다 젊게 묘사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보다 젊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조각 완성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켈란젤로는 제자 아스카니오 콘디비에게 ‘순결한 여자들이 순결하지 않은 여자들보다 젊음을 더 잘 유지하는데, 티끌만큼도 추잡한 욕망의 때

가 묻지 않은 육체를 가진 동정녀라면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성모가 예수를 안고 있는 모티브는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여신 이시스가 아들 호루스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독교 마리아 신앙은 이시스 숭배가 기독교로 흡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위대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미켈란젤로, 그의 삶은 열등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생후 1개월 됐을 때 아버지 루도비코는 피렌체에서 3마일 떨어진 세티그나노의 유모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유모의 남편은 석공이었고, 그로부터 돌을 만지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전기를 쓴 조르조 바사리에 따르면, 미켈란젤로는 “유모의 짓을 따라서 난 끌과 망치를 다루는 기술을 받은 셈이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루도비코 디 부오나로티는 미켈란젤로가 변호사나 가문의 명예가 될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기대하며, 문학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화가가 되려고 했고, 아버지와 형들은 가문의 수치라면서 매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미켈란젤로는 더 열심히 미술을 공부하기로 다짐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교회당의 그림을 베끼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보여주었는데 그가 당시 유명화가 도메니코 지란다리오에게서 그림을 배우게 되고 지란다리오는 미켈란젤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 아버지에게 돈까지 바쳤다고 하네요.

그는 천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상당한 노력파이고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말년에 미켈란젤로는 스케치 대부분을 태워버렸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천재의 ‘피에타(Pieta)’에 대한 해석은 이전의 다른 예술가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것들과 훨씬 달랐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기존의 상심한 늙은 여인의 모습 대신에 청아하고 젊은 천상의 동정녀 마리의 모습을 창조해 냈습니다.



▲ 이시스-호루스와 마리아-예수를 비교한 그림.



▲ 1972년 5월 21일, 라슬로 토트가 제지되는 모습

사실 자식이 먼저 죽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말에도 자식이 먼저 죽으면 애를 끊는 슬픔 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진 뒤, 이미 숨이 멎은 예수를 무릎에 엮고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정결한 우아함으로 빛났으며, 슬픔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수용하는 듯한 평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도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모습은 마치 고통의 시간을 장엄하게 수용하고 견디어내면 평화와 평온함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은 최대한 이상적으로 나타냈고, 손발의 못자국은 최소한으로 작게하여 사람이 아닌 하느님 아들로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5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유모에게 길러진 미켈란젤로의 그리움이 투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동성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543년에 체키노 데이 브라치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브라치는 1년 후 죽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브라치에게 48편의 장례시를 헌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를 성적으로 이용해 돈을 갈취한 모델 청년들도 수도룩했다고 해요. 평생 독신이었던 미켈란젤로는 1532년 23세 연하의 토마소 데이 카발리에리를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요. 카발리에리는 미켈란젤로가 세상

을 떠날 때까지 그의 곁에 있었다고 하니 진정한 사랑이었을 것 같네요.

이 작품에 대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반달리즘이란 말을 아시나요. 이 작품은 수난을 당한적이 몇 번 있는데요. 옛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녀 베드로날라 제대에 있었던 피에타는 교황 율리오 2세가 옛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차례 이동했다가 1749년에 현재의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1736년에는 피에타의 아름다움에 혹한 한 남성에게 의해 성모의 왼쪽 손가락이 부서져 주세페 리리오니가 깨진 부분을 갈아서 합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에타가 겪은 최악의 피해는 1972년 5월 21일 헝가리 출신의 라슬로 토트가 저지른 반달리즘으로 인해 박살났던 것입니다. 당시 라슬로 토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리치고 부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광객에게 두들겨맞다가 경찰에 체포된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파티마의 계시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순 조각을 모아 복원하기는 했지만 기어이 성모 마리아의 코는 다시 찾지 못해서 등에서 일부를 떼어와 복원했습니다. 이제 복원된 상은 방탄유리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은 유명세를 타기 마련인가 봅니다. [▶](#)

앵무새 죽이기

공소장 : 피고인- 톰 로빈슨, 공소사실- 1930년 11월 21일 밤 메이콤 군에서 흑인 톰 로빈슨은 백인 여성 마엘라의 집에 침입하여 마엘라를 강간하였고 이 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전치 몇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공판정

첫 번째 증인 보안관 테이트.

길머 검사의 신문에 증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밥유얼로부터 딸이 흑인 톰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니 피해자가 넘어진 장면과 톰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들은 후 곧바로 톰을 투옥시켰다고 진술한다. 에티커스 핀치 변호사는 이에 맞서 왜 피해자에게 의사를 불러주지 않았는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묻자 증인은 단지 자신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한다. 맞은 눈은 그녀의 오른쪽 눈이라고 답한다.

두 번째 증인 피해자 아버지 로버트 E. 리 유일

검사가 증인에게 톰과 증인의 딸 마엘라와의 성행위장면을 봤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직접 똑똑히 봤고 자신이 가까이 다가가자 도망갔다는 진술을 한다. 이에 변호인은 왜 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의사를 부르지 않았는지 묻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의사를 불러본 적이 없었다고 공색한 답을 한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글을 써보라며 만년필과 종이를 전달하는데 증인은 왼손으로 글을 쓴다.

세 번째 증인 피해자 메이엘라 바이얼릿 유일

검사가 지난해 11월 21일에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고 신문하자, 피해자가 감동이에 게 자기 집의 옷장을 쪼개어주면 5센트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톰이 마당에 들어온 후 돈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는 자신을 뒤에서 덮치며 목을 붙잡고 욕을 했다고 진술한다. 이때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 하고 악을 쓰면서 힘껏 저항했다고 말한다.

재판정을 뜨겁게 달군 핀치 변호인과 피해자간의 신문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증인말로는 방 안에서 증인이 뒤를 돌아보니 로빈슨이 뒤에 있었다고 했지요.』 『네.』

『증인 말로는 그 사람이 증인의 목을 붙잡고 욕설을 했다고 말했지요.』 『맞아요.』 『그가 붙잡고

목을 조르고 덮쳤다고 했지요.』 『그렇게 말했지요.』 『그 사람이 증인의 얼굴을 때린 것을 기억합니까.』 『머뭇거리다.』 『증인은 그 사람이 증인의 목을 졸랐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동안 증인은 저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지요. 증인은 발길로 차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고 했지요. 그 사람이 증인의 얼굴을 때린 것을 기억합니까.』 『.....』 『마이엘라양 쉬운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증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기억합니까.』 『아니요 그가 나를 때렸다 해도 기억하지 못해요 생각이 나지 않는데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요.』 『증인을 강간한 범인은 누구인가요.』 『톰입니다.』 『톰 일어서보세요.』 톰은 오른팔보다 30센티미터 정도 짧은 왼팔이 몸 한쪽에 죽은 듯 매달려있었다.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목을 조르고 때렸다고 진술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금살금 뒤를 따라와 한 번에 넘어뜨렸다고 했지요. 그런데 증인이 뒤를 돌아보니 그가 거기에 있었다고 했지요. 진술을 재고할 의향이 없습니까.』 『.....』 『증인은 뒤를 돌아보니 그가 거기 있었고 그가 증인의 목을 졸랐지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사람은 증인의 목을 풀고 증인을 구타했나요. 그가 오른손 주먹으로 증인의 왼쪽 눈을 멍들게 했나요.』 『나는 몸을 피했고 그게 그만 스치고 지나갔어요. 몸을 피하는 바람에 비스듬히 맞았어요.』 『이점에 있어서는 기억이 뚜렷해지군요. 조금 전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요.』 『저자가 날 쳤다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저 사람이 증인의 목을 졸랐고 구타를 했고 그리고 강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거의 확실해요.』 『증인은 힘이 센 여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동안 뭘 했나요.』 『소리 지르고 발길질 하고 맞싸웠다고 했잖아요.』 『증인은 왜 도망치지 않았나요.』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자가 나를 넘어트렸어요.』 『그리고 내 몸 위에 올라타서 소리를 질렀나요. 증인은 아버지가 창가에 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나요. 톰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비명을 질렀나요. 증인을 구타한 것은 아버지인가요 톰인가요.』 『피해자는 묵묵부답한다.』 『할 말이 있어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 감동이가 저를 겁탈했어요.』

증인 톰로빈슨

변호인의 신문에 톰은 작년 링크 디스 씨 밭에서 목화를 따는 일을 하면서 길목에 있는 유일 씨의 집을 지나가게 되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옷장을 쪼개어주는 일을 돕기도 했다고 말한다. 하루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톰이 집안에 들어가 선반 위 옷장 상자를 꺼내주는 일을 돕기 위해 의자에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두 다리를 끌어안는 바람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넘어진 톰을 키스하며 끌어안으려하자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 했다. 그 장면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목격했다.

중견변호사 에티커스 핀치. 해박한 법률지식과 청렴결백한 품성을 겸비했던 그는 메이콤군에서 신망이 두터운 변호사였다. 메이콤 법정에서 갑자기 국선변호인 선정통지서가 그에게 날아왔다. 사건의 내용은 단순했지만 그 배경을 볼 때 그리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강간치상했다는 사실에 메이콤 주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다. 무엇보다 핀치가 국선변호인 선정을 수락했다는 소식이 메이콤 군에 전해지자 온갖 반대와 비난이 그와 가족들에게 쏟아진다. 특히 9살의 여아 스카웃은 초등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괴롭힘을 당한다. 하지만 핀치는 성직자의 심정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가기로 결심한다.

저자소개



박상흠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동아대 로스쿨 재학시절 편집장을 맡은 일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체특성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영입은 쟁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쓰는 일과 쉽게 설명하는 법률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점차 나의 꿈은 법률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핀치는 노련한 증인신문으로 법정에서 대반전을 이루어 톰의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온갖 시도를 다해본다. 그는 증인신문을 통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얻어낸다. 첫째, 피해자 메이엘라 아버지 유얼은 왼손잡이이며 톰은 왼팔이 오른팔보다 30센티미터 짧은 불구여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강타한 것은 무얼일 가능성이 더 크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톰은 피해자를 뒤에서 덮쳤고 이를 저항하기 위해 발길질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뒤에 서있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앞에서 눈을 때릴 수 있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테이트경관의 진술은 모두 전문 진술일 뿐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톰은 무죄. 하지만 배심원은 톰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결한다.

얼마나 유능하고 명쾌한 변론을 진행하였는가. 하지만 변호인 핀치가 법정에서 펼친 최고급의 증인신문 기술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수감된 톰은 억울한 투옥을 모면하려고 도주하다 총살되고 만다. 결국 핀치가 법정에서 다투고자 했던 것은 톰의 무죄가 아니라 백인의 흑인을 향한 인종편견과 차별과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만약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 간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더라면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를 생각해본다면 배심원의 판결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판단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흑 배심원의 반수가 흑인이었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

1930년대 흑인 차별이 횡행하던 미국사회의 인종갈등의 단면을 한편의 법정드라마로 그려낸 앵무새 죽이기는 한 변호인의 감동적인 변호와 왜곡된 배심원의 판결을 대비시킴으로써 치유되어야 할 미국사회의 비극적 상황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특별히 6살의 여아 스카웃이 9살까지 성장하기까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려낸 인종차별의 비극은 미국 전역에 심금을 울리는 일을 해낸다.

얼마전 작고한 작가 하퍼리가 이같은 작품을 탄생시킨 배경에는 실제 자신의 아버지가 흑인을 변호하기 위해 헌신했던 장면을 목격담이 숨어있었다. 그녀는 인종차별과 인간의 편견이 인간세계에 초래할 비극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소설 제목을 『앵무새 죽이기』로 정한 것은 편견이 탄생시킨 사회적 불합리와 제도적 모순이 어떤 사회적 죄악에 만들어



내는지 드러내려는 의도에 있다. 백발백중의 명사수 핀치는 6세 소녀 스카웃에게 인간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는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핀치의 시선에는 아름답고 착한 봉사를 한 흑인 노예 톰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씌운 백인들의 행태는 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위한 변호를 결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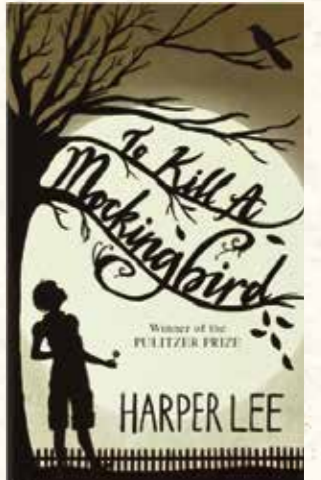
과연 한국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인종편견은 무엇일까. 이를 탐색하기 전 먼저 왜 사회적 약자에게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지 알아야 할 듯하다. 법은 약자와 강자 어느 누구의 편도 되어서도 안 된다. 법은 정의로운 자의 편에 서야하기 때문이다. 약자가 항상 선한 것이 아니며 강자가 언제나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강자가 아닌 약자를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쟁체계의 모습을 띤 인간계에서 약자는 상대적으로 법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해서 약자는 무죄임에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죄인으로 처벌받을 때가 종종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를 행하고도 약자가 강자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때가 많았다는 경험에 기초한 판단 아닐까. 결국 법의 불평등이 자행하는 약자에 부당한 처벌을 우리는 경계하게 되는 것이다.

흑백갈등 문제의 중앙무대에 서게 된 핀치 변호사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국선변호인을 마다하지 않은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스카웃에게 던지는 그의 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스카웃, 단순히 변호사라는 직업의 성격으로 보면 모든 변호사는 말이다.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맡기 마련이란다. 내겐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래. 이 문제에 관해 어쩌면 학교에서 기분 나쁜 말을 듣게 될지도 몰라... 누가 뭐래도 화내지 않도록 해라』

변호사 핀치의 모습은 미래법조인이 될 독자들에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다가가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강자가 죄 없는 사회적 약자를 강탈하고 심지어 누명을 씌울 때 법이 이를 막기 보다는 앵무새를 죽이는 총구의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일까. 법과 법조계를 향한 불신을 지우기 어렵게 될 것이다.

『앵무새 죽이기』가 미국사회에서 성경 다음으로 영향력을 끼친 저서로 꼽힌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어린 아이의 솔직한 시선으로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을 법정드라마의 형식을 빌려 적나라하게 그려낸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소설은 법정이 법률의 유통 장소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소설은 정교한 증인신문의 기술을 보여주어 독자들에게 흔치 않은 경험을 제공하였기에 본고의 서두에 상세히 소개해보았다. 우리사회가 자행한 앵무새 죽이기가 멈춰지길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창



앵무새 죽이기

툭아보기

슈퍼 히어로(Super Hero)는 보통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악과 싸워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슈퍼 히어로의 시작은 1930년대 대공황을 배경으로 하는데, 경제적 고통과 만연한 부패, 그리고 공권력이 부재했던 시대의 탈출구로 만들어진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영웅이라고 한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법! 슈퍼 히어로들의 범법 행위를 톭아보자. editor. 박소희

[어학사전] '툭아보기'는 '살살이 톭아가면서 살펴보다'라는 순 우리말로,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뒤지면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STORY

범법 POINT

Batman

배트맨

고아가 된 이후 고담시(1930년대 뉴욕의 별칭)에서 범죄를 없애는 일에 일평생을 바치기로 한 브루스 웨인. 우연히 집으로 날아든 박쥐 한 마리에서 영감을 얻어 박쥐를 닮은 의상을 입기 시작한다. 배트맨은 기본적으로 초능력이 없는 휴먼 히어로로, 사람의 몸으로 악을 물리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신이 넘나 투철하여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배트맨. 악당들을 응징하기 위해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악당들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배트맨에게 두들겨 맞는데, 아무리 정의의 사도라고 하지만 폭행죄를 피해갈 수는 없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형법 제260조 1항)

보통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57조 1항)

흔히 배트카로 불리는 배트맨의 애마 '배트모바일'. 방탄, 음성인식, 각종 무기 발사, 연막 등이 가능한 최첨단 슈퍼카이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 불법주차 스티커 붙이게 생겼다.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텅.

도로교통법 위반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범하게 되는 형법상 범죄이다. 배트맨의 경우 속도위반과 관련된 제17조 3항, 주차금지과 관련된 제33조 위반.

Wolverine

올버린



STORY

범법 POINT

대다수의 마블 유니버스 히어로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초능력을 얻는다. 스파이더 맨은 방사능 거미에 물렸고, 헐크는 감마 폭탄의 폭발로 초능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뮤턴트라는 존재들은 태어날 때부터 초능력을 갖고 태어나며 개인의 차도 크다. 올버린도 바로 이 뮤턴트로 태어났으며, 손등에서 튀어나오는 뼈에 강력한 금속인 아만다티움을 이식해서 보다 강력한 슈퍼 솔저가 됐다.

영화 <엑스맨>에서 올버린은 뮤턴트들과 우르르 몰려다니며 아다만티움 클로(손에서 나오는 강력한 금속)를 이용해 악당을 물리친다. 그런데 이 아다만티움 클로는 헬기건 탱크건 다 잘라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261조)

살인죄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며, 수단·방법을 묻지 않는다.(형법 제250조)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8조)

헐크

명석한 과학자 브루스 배너는 잠깐의 실수로 감마 방사선에 치사량 이상으로 노출된 이후, 분노를 느낄 때마다 난폭하고 통제 불가능한 피조물로 변한다. 240센티미터가 넘는 키와 450킬로가 넘는 몸무게를 가진 헐크는 평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부숴버린다.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의문. 헐크로 변하면서 다른 옷은 다 찢어져 공중분해 되는데, 어찌하여 속옷만 여전히 핏트되는가. 어쨌거나 속옷만 입고 거리를 뛰어다니는 헐크의 과다노출과 포효·고성방가에 불쾌감을 느낄 시민이 꽤 있을 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제3조 33항),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제3조 21항)

분노조절장애가 의심될 만큼 한번 열 받으면 건물이란 건물은 죄다 부수고 다니는 헐크. 님아, 진정해요.

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이다. 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이용가치 내지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데 있으므로 재산죄의 하나이다.(형법 제36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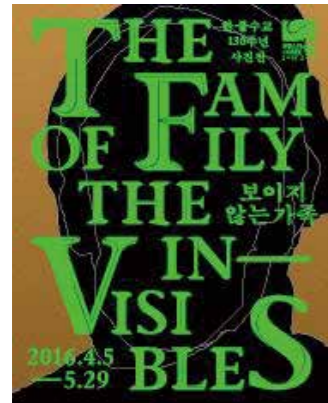


STORY

범법 POINT

Hulk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 온통 가정과 연관된 날들이 모여 있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린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익숙함의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주는 작품들을 모아봤다. 이번 달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미술관과 공연장을 찾는 것은 어떨까.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일우스페이스
 전시기간 2016. 04. 05(화) ~ 2016. 05. 29(일)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http://sema.seoul.go.kr/>

한불 수교 130주년 사진전

보이지 않는 가족

서울시립미술관(SeMA)은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와 롤랑 바르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국립조형예술센터(CNAP)와 아키텐지역 현대미술기금(Frac Aquitaine)이 공동 주최하는 <보이지 않는 가족>전을 개최한다. 프랑스 국립조형예술센터와 프락 아키텐의 소장품 200점 여 점으로 구성된 본 전시에는 1930년대 이후부터 소장된 워커 에반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윌리엄 클라인, 다이안 아부스, 제프 쿤스, 신디 셔먼, 소피 칼, 크리스티앙 불탕스키 등의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포함된다.

<보이지 않는 가족> 전에서 소개되는 사진작품은 근대기 사진과 영화의 시작과 발전을 일궈낸 프랑스 예술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현대미술과 사진의 연결 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Performance

특별하지만 평범한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킬미나우

한때 촉망받는 작가였으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장애를 가진 아들만을 위해 헌신한 '제이크'. 선천적인 장애로 평생 휠체어에서 생활하며, 의사 전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17세 아들 '조이'.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에서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조이'는 이제 곧 성인이 되는 자신을 보살펴주는 '제이크'의 방식이 불만이다.

'제이크' 역시 최근 아들이 보이는 신체적 변화와 돌발행동들에 당혹스러움과 걱정이 많다. '조이'의 성장과 독립을 두고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과 주변인들의 일상을 마주하며, 우리는 장애인 또한 독립성을 지닌 평범한 개인임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나'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들과 부딪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더불어 그 희생이 한계치에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떻게 서로를 보살펴야 하는지 묻는다.



공연장소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공연기간 2016-05-01(일) ~ 2016-07-03(일)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홈페이지 <http://www.thebestplay.co.kr/>

세계가 인정한 최초의 한국 발레 유니버설 발레단 심청

창작발레 '심청'이 창작 3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10~18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오른다. '토슈즈를 신은 한국의 고전'이라 불리는 이 작품은 1986년 초연 이래 13개국에서 200여 회 이상 공연해 '발레 한류'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유니버설발레단 '심청'은 고전과 현대, 서양과 동양의 감성이 적절한 밀도와 온도로 빛어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한국 고유의 소재를 다루면서도 움직임은 철저하게 클래식 발레에 기반을 둔 것이 특징이다. 한국 고유의 정서인 '효' 사상을 '글로벌'한 감성으로 녹여낸 것도 인상적이다. '심청'은 원작에 등장하는 뱀덕어머니의 존재를 삭제하고, 부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더욱 초점을 맞춰 깔끔하고 몰입도 높은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특히, 처음 보는 이도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구조라서 온세대가 어울려 볼 수 있는 '가족공연'으로서도 충분한 매력을 갖췄다.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공연기간 2016-06-10(금) ~ 2016-06-18(일)
 관람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홈페이지 <http://www.universalballet.com/>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 동치미

연극 <동치미>는 무뚝뚝하지만 가족밖에 모르는 아버지,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모두 내어주는 어머니, 서로 싸울 땐 여전히 철없어 보여도 효도하겠다는 마음만은 굴뚝같은 삼남매, 이렇게 다섯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이야기이다.

2009년 초연 이후 올해로 8년째 이어가고 있는 동치미는 '2015 제14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연극상' 수상에 빛나는 작품으로, 소설로도 출판되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널리 전하고 있다. 자식을 확대하거나 가족 간 살인사건이 비밀비재한 요즘, 가족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착한 작품이다.



공연장소 대학로 예그린씨어터
 공연기간 2016-05-16(목) ~ 2016-06-12(일)
 관람료 전석 5만원
 홈페이지 ticket.interpark.com

법무법인(유)로고스 실무수습 신청 안내

실무수습 시기	2016. 7. 11(월) ~ 7.22(금) 2주간
실무수습 내용	변호사의 개별지도, 공통과제, 강의, 단체토론, 공익활동 체험 등
지원자격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지원기한	2016. 5. 20(금) 24:00
제출서류	이력서(로고스 홈페이지 양식) / 자기소개서(5페이지 이내) 성적증명서(로스쿨, 학부)
선발인원	20명 내외
선발절차	서류심사를 통하여 2016. 5. 31까지 합격자 개별통보
담당자	02-2188-1025 (담당변호사: 임형민)



제1회 한국민사법학회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논문주제	자유주제 (우리나라 민사법학과 관련된 주제-우리 민법전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다루는 논문 외에도, 민사부속법령/민사절차법과 관련된 주제도 가능함)
참가자격	일반대학원생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으로, 민사법 전공이 아니거나 전공 미정인 경우에도 참가 가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공동연구도 가능하지만 참여자는 3인 이하로 함
논문작성요령	한국민사법학회 학술지(민사법학)의 투고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응모마감	2016. 5. 31(화) 18:00
경연	2016. 6. 9(목) 14:00 안동국학문화회관
발표 및 시상	2016. 6. 10(금) 10:00 안동국학문화회관
문의	교육이사 김형석 교수 (hskim46@snu.ac.kr / 02-880-9066)

2016년도 한국은행 주최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대상	대학 및 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석·박사과정 불문, 휴학생 포함)
주제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과제 등
작성기준	A4용지 20매 이상
응모방법	2016.7.29(금)까지 이메일(legaloffice@bok.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

결과발표 및 시상

등급	편수	시상 내역
최우수상	1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부상(상금 500만원)
우수상	1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부상(상금 300만원)
장려상	3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부상(상금 100만원)

문의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참조,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02-759-4095, 4087)으로 문의



LawSCHOOL 차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차〉에서는 '독자 코너'를 이끌어 갈 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로스쿨 차〉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접수기간** 상시접수
- 2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showe@leet.or.kr
접수시 파일명은 반드시 「독자 코너_이름.hwp」로 작성
팩스 접수 : 02)888-2025
원고 상단에 이름 및 연락처, 소속을 반드시 명기
- 3 유의사항**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 취소
- 4 문의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주임
Tel: 02)752-2037
E-mail: showe@leet.or.kr / Fax: 02)888-2025

가로 열쇠

- ①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사고발생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지해야 할 의무 또는 부실고지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말한다(상법 제651조).
- ③ 국회(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부의 기관(군주나 대통령)이 재가 또는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결정적 또는 잠정적으로 저지하는 권한을 말한다.
- ④ 점유(민법 제197조) · 선점(민법 제252조) · 사무관리(민법 제734조) · 미분리과실의 분리(민법 제102조) 등과 같이 외부에 표시하지 않는 내심적 의사로 일정한 사실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⑤ 일반적으로 시민의 자유 · 권리의 확인 · 보장의 문서로서,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가 혁명의 의미와 사명을 천명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을 말한다.
- ⑥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湮滅), 은닉(隱匿), 위조(偽造)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증거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범죄이다(형법 제15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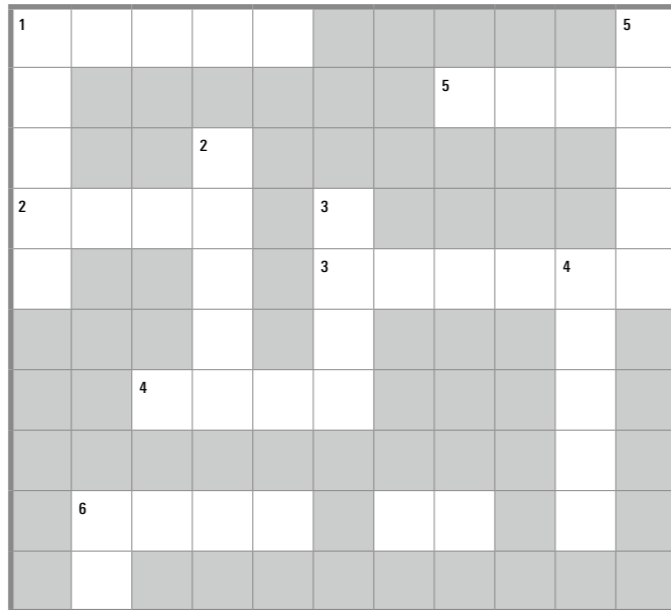
세로 열쇠

- ① 고의의 지적 · 의지적 요소가 가장 위축된 형태의 약한 고의로서,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를 말한다.
- ②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한다. 의사나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하여 형이 중하다.
- ③ 강행규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이지만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즉 강행규정을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회피수단을 통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사람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9조).
- ⑤ 증인이 법률상의 일정사유로 증언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⑥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조).

가LAW 세LAW 낱말 퀴즈



이웃@ 뉴스4고운@ 4월10일
 168888@ 168888@ 168888@ (제1)
 168888@ 168888@ 168888@
 168888@ 168888@ 168888@ (제1)



LawSCHOOL 창 명예기자 3기 모집

〈로스쿨 창〉은 로스쿨의 대표 언론이자 소통의 공간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의 꿈을 담은 '깨끗한 창'이 되겠습니다.

〈로스쿨 창〉이 창간 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로스쿨 창은 격월간으로 4,000부씩 발행되며 로스쿨을 비롯해 전국의 대학교,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언론사 등 다양한 곳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각종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① **모집대상** 기사 작성이 가능한 열정적인 로스쿨 학생
- ② **모집인원** 00명 (각 로스쿨별 1~2명)
- ③ **모집일정** 접수기간: 4월 25일(월) ~ 5월 22일(일) 24:00까지
결과발표: 5월 25일(수)
- ④ **접수방법** 명예기자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howe@leet.or.kr) 송부
- ⑤ **제출서류** 명예기자 지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⑥ **활동기간** '16.6.1(수) ~ '17.5.31(수) 1년간
- ⑦ **주요활동** 〈로스쿨창〉 모니터링, 원고작성 분기별 1건
- ⑧ **활동특전** 원고 게재 시 원고료 지급, 우수자 활동증서 및 감사장 수여, 협의회 발간책자(변호사시험 모의고사 해설집 등) 및 자료 제공
- ⑨ **문의사항** 02)752-2037, showe@leet.or.kr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상군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송남대학교



송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